

201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제20대 국선 근로자 투표참여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연구

2016. 10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용역보고서

연구용역과제 : 제20대 국선 근로자 투표참여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박이석(단국대)

공동연구원 : 임승빈(명지대)

장국찬(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박종혁(한양대)

조태명(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연구기간 : 2016. 6. 15. - 10. 31.

목 차

<요약문>	1
.	7
.	9
1. 정치참여의 이론적 검토 및 근로자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검토	9
2. 외국에서의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 방안 사례	14
.	21
1. 근로자의 정의	21
2. 근로자 현황	21
3. 한국 노동시장 특성과 투표참여 어려운 직종현황	25
4. 유권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제도	33
.	36
1. 설문조사 내용 및 응답자특성	37
2. 근로자 투표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40
3.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투표행태 분석	52
.	68
1. 근로자 투표참여 제약요인	68
2. 정책적 개선방안	70
.	78
<참고문헌>	83
<부록> 설문문항	85

〈표 차례〉

〈표 2-1〉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현황	12
〈표 3-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	22
〈표 3-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23
〈표 3-3〉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실태	25
〈표 3-4〉 산업별 비정규 근로자 및 한시근로자수 현황	26
〈표 3-5〉 근로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근무여부 빈도표	30
〈표 3-6〉 직업별 토요일 근무일수 빈도표(%)	31
〈표 3-7〉 근무시간 유연성 빈도표(%)	31
〈표 3-8〉 직업별 개인시간 할애 여부 빈도표(%)	32
〈표 3-9〉 주요 국가별 강제투표제도 규정	35
〈표 4-1〉 근로자 투표참여 설문조사 개요	39
〈표 4-2〉 설문조사문항 내용	39
〈표 4-3〉 인구·사회적 응답자 특성분포도	39
〈표 4-4〉 귀하께서는 평소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41
〈표 4-5〉 귀하께서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어떻게 하셨나요?	41
〈표 4-6〉 귀하(사전투표하신 분)께서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42
〈표 4-7〉 귀하(사전투표하신 분)께서는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42
〈표 4-8〉 귀하(투표하신 분)께서는 투표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43
〈표 4-9〉 귀하(투표하지 않은 분)께서는 선거 당일(2016. 4. 13)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43
〈표 4-10〉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4
〈표 4-11〉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4
〈표 4-12〉 귀하(투표하지 않은 분)께서는 이전 선거의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 하셨나요?	45
〈표 4-13〉 귀하께서는 선거의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
〈표 4-14〉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 의원선거일을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46

<표4-15>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통지(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	47
<표4-16>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시간 청구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47
<표 4-17> 사전투표제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47
<표 4-18>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제도(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48
<표 4-19> 투표참여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취업 가점, 국·공립 유료 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 가?	49
<표 4-20> 투표 불참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벌금부과)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49
<표 4-21> 선거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9
<표 4-22> 귀하께서는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1.2.3)로 기입해 주세요.	50
<표 4-23> 귀하께서는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있으신 분에 한하여 기입)? ...	51
<표 4-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참여 특성(유효퍼센트)	53
<표 4-25 > 근로자 사전투표제도 인지방법 특성(유효퍼센트)	54
<표 4-26> 근로자 사전투표 결정 주요이유 특성(유효퍼센트)	55
<표 4-27 > 근로자 투표참여 결정요인 특성(유효퍼센트)	58
<표 4-28> 근로자 투표불참자의 당일상황 특성(유효퍼센트)	60
<표 4- 29> 근로자 투표참여 장애요인 특성(유효퍼센트)	62
<표 4-30> 근로자 사전투표제도 인지도 특성(유효퍼센트)	64
<표 4-31> 근로자 투표보장제도 인지 특성(유효퍼센트)	65
<표 4-32> 근로자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특성(유효퍼센트)	66
<표 4-33> 근로자 투표참여자 처벌제도 도입 특성(유효퍼센트)	67
<표 5-2> 각국의 투표시간 및 투표일	72

<그림 차례>

<그림 1-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변동추인	24
------------------------------------	----

〈요약문〉

-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정치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들이 처한 불안정한 신분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선거참여가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고, 이들에 의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자 중 투표하기 어려운 직종으로는 블루칼라인 기능원 및 기능관련 종사자(통신장비 수리원·제빵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인쇄판 출력원·택시버스 운전원), 단순노무종사자(아파트 경비원·주유원·택배원·주차안내원), 서비스 종사자(미용사·객실 승무원)와 판매종사자(백화점 판매원·매장계산원·자동차 영업원)로 나타났음. 이러한 근로자의 투표참여 제약요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설문조사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음. 첫째, 근로자들의 정치 관심도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근로자의 4.13 선거 투표참여 실태에 관한 내용임. 그리고 셋째,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에 관한 사항이고, 넷째, 투표당일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한 내용이며, 다섯째, 투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임.
- 결과로는 근로자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51.8%로 가장 높고, 20.7%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근로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참여 시간 보장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투표참여 중요성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지난 4.13 선거에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는 사전투표로 22.0% 투표했고, 투표소투표로 54.2% 투표했다고 응답해 전체 76.2%가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투표율 58.0%와 비교하면 18.2%가 높게 나타나 ‘과투표현상’이 나타났음. 투표행태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낮게 나타나 일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행태 조사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음.

- 근로자들은 사전투표제도를 TV,신문 등 방송 및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전투표하기가 편리해서’와 ‘투표 당일 투표할 수 없어서’, ‘선거일 활용’으로 나타나 사전투표가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사전투표 편리성과 사전투표기간 등을 TV, 라디오 및 신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야 근로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서’와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음. 선거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생각하여 투표한 근로자들의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85.7%로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성(74.3%), 학력별로는 고졸(7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근로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선거가 국민의 의무로서 투표하게 중점 홍보하고, 정책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 중 투표하지 않았다고 한 자의 60.2%가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은 30.7%에 이르렀음. 투표가 가능한 상황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와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및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근로자들도 일반유권자와 같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무관심으로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하는 투표장애 요인으로는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무관심’과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혐오’, ‘직장의 투표참여 배려부족’으로 나타났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정치에 관한 관심이 없어서’와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유권자와 같이 근로자들도 ‘정치 및 선거에 관한 무관심’이 가장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와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로 응답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및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투표하지 않은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선거당일 근로자의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49.4%에 해당하는 회사가 선거일에 정상 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음.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의 38.7%가 정상 근무하였고, 파견근로 및 한시근로의 33.3%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45.7%가 통지하였고, 고용주의 53.4%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음.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직 회사의 대표자 등이 근로자의 투표참여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관해서는 찬성이 51.5%로 반대 14.6%보다 37.1%가 높게 나타났음. 투표참여 우대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에 대해 세대별로 보면 30대(64.5%)가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56.8%), 학력별로는 대졸(57.5%), 지역별로는 경기(59.2%)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투표 불참자에 대해 처벌하는 강제투표제도는 적극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강제투표제도가 투표참여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라는 하나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기권도 국민의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으로는 ‘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과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강화’를 들었음. 근로자들이 투표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고,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 하는 등 투표참여를 위한 주위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근로자의 정치 무관심’이며, 정치 무관심은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고졸보다 대졸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높음. 다음으로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이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정상근무하거나 선거일이 무급휴일로 되어 있고, 근로자 투표참여 시간 보장제도 미흡을 들었음.

○ 근로자 투표참여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투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현재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거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고 있는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법 개정이 필요함. 그러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증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 투표사무원의 확보, 늦은 시간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시에 투표지 투표소개표와 익일개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현행 사전투표기간 2일(금·토요일)을 3일(금·토·일요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선거일정상 사전투표기간을 3일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현행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하는 것을 선거일전 4일부터 2일간 하여 토·일요일에 사전투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로자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행 사전투표 장소로 읍·면·동사무소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읍·면·동사무소, 국제공항, 서울역 등으로 확대하여 출국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하고 출국할 수 있게 하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 전철 및 역전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투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투표 기간·시간 및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성 등을 홍보하여 근로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선거일을 법정 유급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회사 등이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거나 무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법정유급공휴일로 지정

하여 고용주의 승인 없이 투표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10조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고용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신청방법과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또는 사업자 단체와 업무협의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도(Incentive System)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도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하여 투표한 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발급한 후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공주차장 등을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투표참여에 별다른 효과성이 없다고 하여 중단하였으나 ‘일본 사례’처럼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투표확인증 소지자에게 금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지난 선거와 같이 주차장, 공원 등에서 요금을 할인할 수 있게 하고, 승진가점제 또는 근무평가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근로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선거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선거와 정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으로 전파시키고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이용하여 ‘TV 좌담 토론회 개최’ 및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정치참여 중요성을 방영하거나 게재하고, 전문강사의 찾아가는 강의, 근로자 자체 직장교육시 민주시민정치교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방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들이 투표참여를 쉽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함. 그러나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

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 따라서 이 용역보고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근로자의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음.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가 특정지역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표본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으며, 체계적으로 표본추출을 할 수 없었다는데 한계가 있음.

1. 서론

대의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그 집약된 정책을 집행하며, 정부를 구성하는 기능이 선거에 있다. 또한 선거는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선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국민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그러한 증거가 매년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투표 참여율이 낮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통치행위를 한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그들만의 대표로 생각하고 국정수행에 비협조적이고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만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대표자로 선출되어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투표참여를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정치적 무관심’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한편으로 국민들이 정치체제에 대한 실망감에 의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정치체제에 만족감을 표시하여 참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민의 정치체제 실망감으로 인한 무관심은 선거결과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항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체제 만족감에 의한 무관심은 정치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정부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라고 할 때 소수의 참여에 의한 대의제는 대표성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학자들은 투표참여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며 다양한 정책을 법으로 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사전투표제(early voting)와 인센티브제(incentive voting), 투표시간보장제(voting time guarantee)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투표시간보장제는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최근 우리의 공직선거 투표율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75.8%,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56.8%,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58.0%를 나타내고 있어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60%이하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50.3%로 가장 높고, 다음은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0%,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3.6%,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11.3%로 나타났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와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유권자 개인적인 문제이나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를 찾아내고 그 요인을 밝혀 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학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4. 2. 13.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청구 및 고용주의 투표시간 보장 실태에 대한 근로자와 고용주의 인식과 실질적인 행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정치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이들이 처한 불안정한 신분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선거참여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근로자들 중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가 어려운 직종이 무엇이며,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사전투표제를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하는 방안이 없는 지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등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실증적으로 근로자 행태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으로 인한 투표참여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자들은 근로자의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투표참여에 대한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회마저 박탈할 경우 불만은 더욱 고조되어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치권

에서도 근로자의 투표참여가 매우 낮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연구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먼저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실태에 관한 질문이고, 다음은 근로자들이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활성화 방안을 찾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근로자 투표참여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가 논의되어 어떤 이론에 의해 지금까지 연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근로자 현황과 선거권 보장 제도를 분석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투표참여 행태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근로자 투표행태 분석을 토대로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요약 정리하고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II. 근로자 투표참여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정치참여의 이론적 검토 및 근로자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치참여의 정의

정치참여는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며 참여자의 참여형태, 참여자의 유형, 참여의 적극성 정도 등을 공통적으로 논의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참여의 형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치참여는 투표참여, 선거운동에 참여, 협동적 참여, 개인적 참여로 나눌 수 있으며 참여자인 시민은 정부 인사의 선출, 정책 또는 법안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버바(Verba)와 니(Nie)는 정치참여를 시민들이 정권을 선택하기 위하여 권리를 위임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는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비관습적 정치행위인 특정 정권의 지지, 불법적 항의, 폭력 등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참여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관습적 정치행위만을 정치참여로 인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치참여의 정의를 선거활동과 비선거활동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선거활동에는 투표와 선거운동, 비선거활동에는 협동적 활동, 개인적 참여

로 구분하였고, 정치에 대한 신념, 인지, 비제도적·비관습적 참여, 정부구조의 변화를 시도하는 참여, 비의도적 참여의 결과 등은 정치참여 개념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특정정권의 지지를 위한 불법적인 저항, 시위 등과 같은 비관례적 정치행위를 배제한 것으로 제한적 의미에서 정치참여를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Verba & Nie, 1972).

밀브레스(Milbrath)와 고엘(Goel)은 정치참여를 “정부 또는 정치를 지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개인)의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고, 정치적 관심을 유지하는 것도 정치참여로 판단하였다. 밀브레스와 고엘이 말하는 정치적 관심은 신문,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하여 정치적 이슈를 관찰하는 것도 포함하였고, 정치참여의 형태를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였다. 또한, 정치참여를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구분하고 관습적 정치참여는 투표, 선거유세 참석, 협동적 활동, 시민의 개인적 접촉,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항의와 의사전달형태로 구분하였다(Milbrath & Goel, 1977). 이러한 밀브레스와 고엘에 의한 정치참여의 정의는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단순히 의식적(ceremonial)이고 지지적인(supportive) 행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옥, 2013).

헌팅턴(Huntington)과 넬슨(Nelson)은 정치참여를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정치참여는 실제의 정치활동이며, 둘째, 일반시민의 정치활동이고, 셋째,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된 활동에 한정되며, 넷째,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은 그 활동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참여의 범주에 포함되며, 다섯째, 자발적 참여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동원되는 참여도 정치참여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Huntington & Nelson, 1976)

쉐릴(Sherril)과 보글러(Vogler)는 “시민들이 행하는 어떤 일을 통하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치참여를 정의하였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행위로서 자발적, 비제도적 참여 등은 제외하였다. 여기서 참여의 개념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형태로 자발적, 민주적 참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만을 고려하여 시민의식과 같은 심리적 측면은 배제함으로써 정치참여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Sherril & Vogler, 1982).

정치참여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로젠스톤(Rosenstone)과 한센(Hansen)에 의하여 이뤄졌다. 이들은 정치참여를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곧 정부 활동 및 정책 결정이라고 보았을 때,

의식적인 행동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밀브레스와 고엘의 정의보다는 협소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바와 니의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옥, 2013 재인용).

맥클로스키(McClosky, 1968)는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긍정적 입장의 근거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정부에 의해서 적절히 대표되지 않으며, 무관심의 확산은 정부가 비반응적인 인물 즉 비참여자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비참여자가 지적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적 수준을 개선하고 판단능력을 증대시킬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의 경험이며, 무관심은 체제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 입장의 근거로는 정치적으로 지적 능력이 낮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들의 참여는 민주적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려 깊지 못한 참여보다는 무관심이 오히려 좋다고 밝히고 있고, 최적의 조건하에서도 유권자의 대다수는 복잡한 정치적 판단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과 지식, 판단능력 등을 가진 적극적인 소수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며, 적극적인 소수 이외의 광범위한 정치참여는 지나친 논쟁, 분열, 불안정들을 가져 온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참여의 유형으로 버바(Verba)와 니(Nie)는 시민들이 권리를 위임할 대표를 선출하거나 정부의 정책 및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밀브레스(Milbrath)와 고엘(Goel)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형태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고 투표, 선거운동, 정치단체 활동 등이 정치참여의 유형이라고 밝혔다. 헌팅턴(Huntington)과 넬슨(Nelson)은 정치참여를 자율성의 정도로 구분하고, 자율적 참여는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행위, 동원된 참여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아닌 다른 이가 계획한 참여행위로 선거운동 활동, 조직 활동, 로비 활동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정치참여를 정의하자면 좁게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직접적인 행위인 참여가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주목으로 인하여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정치참여를 투표참여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투표참여는 근로자들이 정치적 의사를 투표에 반영하여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였다.

(2) 근로자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연구¹⁾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 비하여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일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17대 선거를 제외하고는 60%가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저조한 투표참여율에 대한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원인 진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2011년 한국정치학회에서 연구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진행된 것이 없었다.

<표 2-1>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현황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총 투표자 수	투표율
20대	2016.04.31	24,430,746	58.0%
19대	2012.04.11	21,806,798	54.2%
18대	2008.04.09	17,415,666	46.1%
17대	2004.04.15	21,581,550	60.6%
16대	2000.04.13	19,156,515	57.2%
15대	1996.04.11	20,122,799	63.9%
14대	1992.03.24	20,843,482	71.9%
13대	1988.04.26	19,850,815	75.8%
12대	1985.02.12	20,286,672	84.6%
11대	1981.03.25	16,397,845	77.7%
10대	1978.12.12	15,023,370	77.1%
9대	1973.02.27	11,196,484	71.4%
8대	1971.05.25	11,430,202	73.2%
7대	1967.06.08	11,202,317	76.1%
6대	1963.11.26	9,622,183	72.1%

1) 한국정치학회, 201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 pp.6-85.

5대	1960.07.29	9,778,921	84.3%
4대	1958.05.02	8,923,905	87.8%
3대	1954.05.20	7,698,390	91.1%
2대	1950.05.30	7,752,075	91.9%
1대	1948.05.10	7,487,649	95.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전통적 정치참여 결정요인들이 대의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는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관계적 자원 등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상호간의 상승적인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여 불평등의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정치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집단에게서 행해지는 정치참여의 정도는 그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치환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정치학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한국정치학회, 2011. PP. 82-83).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해석상의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 결과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율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투표참여율은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형태”에 있어서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있어서는 100명 이하와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는 직장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101~29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타나 이들의 투표참여에 고용조건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 유권자 조사의 투표불참자들은 대부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

하여 자발적 기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빈도수가 거의 65%에 달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회경제적 변수들에서 공히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거기권 이유는 일반유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에게서도 ‘정치적 무관심’이나 ‘선호후보 없음,’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고 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기권에 있어서는 일반 유권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용조건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조건이 투표참여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두드러지게 겪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결국 이렇듯 특수한 장애물이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의 구현을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하며, 77.3%의 노동자는 투표 참여에 있어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일용직·임시직, 시간제 등의 경우 어느 정도 투표일 휴무를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파견·용역·도급직 종사자나 심지어 계약직·기간제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일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에게 투표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지위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국정치학회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기되었던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와 「공직선거법」 제6조의2가 신설되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찾아보고 이러한 제도에 보완점이 무엇인가를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외국에서의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 방안 사례

근로자의 투표참여는 근로자들이 정치참여의 형태로서 정치적 의사를 투표로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의 투표참여형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참여 형태와 같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찍을 후보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자발적 기권이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어 약자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제도를 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외국사례에서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1) 일본²⁾

일본은 근로자 및 일반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투표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투표확인증 제도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 초기부터 이 제도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9월에 실시한 오사카 시장선거에서는 오사카의 한 수족관에 있는 상어사진을 투표확인증으로 활용한 것이 그 시작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조관의 상어가 인기가 높았고, 친숙한 이미지를 통하여 많은 투표가능자들이 상어사진이 들어있는 투표확인증을 받기 위하여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오사카시의 사례에서는 상어사진을 얻는 것 이외의 인센티브는 없었으나 1999년 4월 동일지방선거에서는 투표자 인센티브가 추가된 투표확인증이 발행되었다. 고베에서는 투표확인증을 지참할 경우, 이 지역의 사우나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금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약 1,500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1년부터 나고야시의 슈퍼마켓 야마나카에서는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품가격을 10~15% 할인해 주는 세일을 실시하였다.

일본에서 투표확인증을 통한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를 선거세일이라고 표현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일본에서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쇼핑할 때 상점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투표한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확인증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에게 배부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지역의 상점, 대형 슈퍼마켓이나 각종상점에 가면 상품가격을 일정 정도 할인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체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확인증을 발급하고, 상점가 상인연합회는 선거세일에 참가할 상점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청년회의소나 시민단체, NGO단체 등이 선거세일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에서 유권자 인센티브제도로써 투표확인증을 통한 선거세일이 본격

2) 고선규. 2010.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와 투표 참여.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제1호. pp.39-95.

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2003년 11월에 실시된 중의원선거부터이다(朝日新聞, 2007.5.27). 아이치현(愛知縣)에 위치한 가리야(刈谷) 상점가에서 『투표를 제고를 위한 선거세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선거세일이 투표확인증을 통한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중의원선거에 투표하고 투표확인증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최대 40% 할인해 주는 세일을 시작하였다. 상점가에서는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방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투표한 유권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참의원선거에서는 하코네(箱根) 온천지역에서 투표확인증으로 투표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 투숙자에게 온천 숙박비를 50% 할인해 주는 등 투표확인증을 통한 투표자 인센티브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투표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2003년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운동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투표를 제고 움직임은 단순히 정치에 참가하는 비율을 높이자는 것과는 달리 유권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선택지 즉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 실현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하자는 움직임과 결부되어 시작되었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지만 특히 각 정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감이 미약하므로 유권자들이 투표참여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투표참여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충실히 작성하고 이것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권자는 매니페스토를 선택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하자고 시민단체나 NGO단체가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 평가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각 지역에 존재하는 청년회의소(JC), 전국 매니페스토 평가 연합회, NGO 단체인 『링크포럼』, 『一新塾』, 『정책과정연구기구』등의 단체는 대체로 각 정당의 정책이나 매니페스토 등과 관련된 공개토론회 개최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각 정당의 대표나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정책선택을 위해 투표참가를 호소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매니페스토 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상점가협회에게 선거세일참여를 제안하였다.

(2) 프랑스³⁾

1980년대부터 프랑스의 투표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원의원 투표율은 50% 중반, 광역의원선거 및 중역의원 선거 등 지방선거 투표율은 40%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은 정치 및 선거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관심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프랑스는 근로자 등 유권자의 투표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표방법, 기권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홍보를 진행하였고, 이 역할은 「단체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1999년까지는 ‘시민정보센터(Centre d’information civique, CIC)’가 선거홍보를 담당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984년에 설립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Civismeet Democratie, CIDEM)’가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선거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CIDEM이 선거홍보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 비용은 국가의 지원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 주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선거홍보를 위한 비용 이외에는 CIDEM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선거홍보 활동의 주체는 CIDEM이었으나 새로운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시작하면서 민간단체 주도로 선거홍보 활동이 발전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선거 주관 부처인 내무부와 프랑스 시장협의회(AMF)는 CIDEM과 협력하여 선거인 명부 등록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프랑스 1500여개 코뮌에 3만개 포스터 및 25만개의 유인물이 배포되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홍보 활동이 전개되었다.

시민단체의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어린이 및 청소년 협의회 전국단체’(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ANACEJ)에서 진행하였다. ANACEJ는 홈페이지, SNS, 인터넷 신문 등 인터넷 매체와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2012 Je vote’, ‘기권 방지를 위한 광고·홍보 대행사’(Agences de communication contre l’absentio) 등의 캠페인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이밖에도, 프랑스의 광고 홍보 대행업체들은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2012년 대선에서의 투표를 장려하는 공영광고를 만들었다. 이 광고들은 2012년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방영되었고 잡지도 배포했으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프랑스 영화계에서는 ‘1,000개의 얼굴’이라는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3) 오창룡·이재승. 2015. 프랑스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지속 요인 : 전자투표 법제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EU연구』 제41권. pp.103-132.

제작하여, Canal +, M6, 국회방송 등 TV채널 및 영화관에 방영하였다.

(3) 미국⁴⁾

미국은 근로자 등 일반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 유권자 등록 운동, 투표독려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우선, 미국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 이후 투개표방식을 고려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 플로리다 재선에서는 36일 동안이나 당선자를 내지 못한 채 수검표 작업과 해외 부재자표 개표 등을 거쳐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지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부시는 대법원의 판결로 고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최종 집계에 포함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플로리다 주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고어 후보를 지지한 국민이 부시 후보 지지보다 더 많은데도 재개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태가 봉합됐기 때문에 ‘선거를 도둑질 당했다’는 불만이 비등한 바 있다. 그 이후 플로리다는 기존의 편치카드 투표방식에서 DRE와 옵티컬 스캔 방식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전자투표 도입 논의는 무효표 방지를 위한 투표기기 개혁과 맞물려 확대되었다. 이는 각 주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투개표방식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한 투표기기의 비율은 DRE가 14%, 옵티컬 스캔은 34% 그리고 편치카드는 35%이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총 투표수의 2% 내외의 표가 무효표로 간주되었는데, 투표기기에 따른 무효표 비율은 편치카드가 49%로 투표기기 사용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플로리다 선거 결과에 대한 연구는 편치카드를 사용한 카운티에서 특히 유색인,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유색인이 높은 무효표의 비율을 반영하므로, 투표기기 개혁은 무효표 비율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임혜란, 2007). 근로자 등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운동(Get Out the Vote, GOTV)이 선거 당일 및 막판 선거운동의 주요한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독려운동에 대한 지출 및 이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규정을 통해 투표참여 독려운동 및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운동이 연방선거활동(Federal Election Activities)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표 및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홍보 활동이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한 규제 대상

4) 임혜란. 2007. 미국 전자투표 도입과정의 주요특징과 결정요인. 『국제·지역연구』 제16권제4호, pp45-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 운동 및 투표참여 독려운동의 정의는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제11장제100조제24절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내국세법 제501조c의제3항에 의해 규정되는 비영리단체(교회,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 시민단체)의 비당파적 투표독려운동 혹은 유권자등록운동은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해 규정되는 연방선거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출에 있어서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정당 혹은 특정 정당과 관련된 단체의 투표 관련 홍보활동은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제를 받으며, 이와 관련된 지출은 상기 법률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로 간주되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주 단위에서 선거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주 국무부에서 유권자 등록 일정 및 서식, 선거일과 같은 향후 선거와 관련된 일정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역대 선거 결과 등을 국무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한다. 과거에 간혹 주 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투표독려활동이 진행된 바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상시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2011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투표독려운동은 없었다.

미국의 최대 음악채널인 MTV는 2012년 대선에서 근로자 및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 판타지 게임인 “가상선거 12”를 개발하여 지난 대선 종료까지 운영하였다. 게이머들은 후보자의 정직성, 성실성, 모금 활동의 투명성 등을 바탕으로 설정된 후보자들의 능력지수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팀을 구성한 후, 최소 5개에서 최대 12팀으로 이루어진 리그에 참가하게 되었다. 선거인 등록,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 그리고 투표와 같은 실제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마다 참가자들에게 포인트가 주어지며, 참가자들은 이 포인트로 MTV에서 제공하는 상금 및 각종 상품에 응모할 수 있었다.

(4)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근로자 등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선거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스페인에서 선거홍보의 주역은 정부 및 자치주 정부이며 시민단체도 선거홍보를 하였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에 대한 홍보보다는 정당 및 후보자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나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투표참여 홍보도 한다.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 매체가 아닌 위원회 웹페이지에 선거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선거관련 정보 홍보 및 선거

절차는 스페인 내무부의 인포 엘렉토랄(INFO ELECTORAL)에서 전담한다. 또한 스페인 정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다. 통상적으로 라디오 및 TV 방송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은 위의 웹페이지에서도 게시한다. 스페인에서 인정하는 자치주의 언어로도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으며 용어도 각 홍보물의 하단에서 체크할 수 있다. 스페인어, 카탈란어, 가예고어, 에우스케라 및 발렌시아어로 홍보물이 존재한다. 또한, 각 자치주 정부에서도 자치주 및 시 지방선거 절차 및 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통상적으로 각 자치주 홍보실에서 선거관련 정보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자치주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시민단체와 언론사에서 투표홍보를 진행한다. 25-M 등 스페인 술 광장에서의 시위를 주동한 시민연대는 2011년 11월 총선에 근로자 등 유권자 투표의 중요성을 홍보했으나 2011년 총선의 투표율은 2008년 총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스페인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선거홍보를 하고 있으며 정부, 정당 및 후보들의 홍보를 돕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 당에서 청년부에 여러 혜택을 지원하면서 선거 참여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한다. CJE 스페인 정치 청년 연합회에서 2011년 지역 선거 때 “나는 이유를 알아”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홍보를 하였다.

일본,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근로자 등 유권자 투표독려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에서와 같이 투표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점이나 대형슈퍼마켓 등에서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게 하는 ‘투표참여 확인증제’와 ‘매니페스토’를 투표참여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는 프랑스, 미국, 스페인처럼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투표참여를 위해 전자투표제, 유권자등록운동, 투표독려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스페인은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투표참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시민단체 위주로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사례와 같이 인센티브제 및 매니페스토 운동을 투표참여에 활용하고, 프랑스·스페인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간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근로자 등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Ⅲ. 근로자 현황과 선거권 보장제도

1.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근무하여 투표참여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현장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를 근로자로 규정하였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⁵⁾와 ‘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⁶⁾에 의해 근로자에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53조에 의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 갑을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는 바람에 현장 근로자의 투표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근로자 현황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말한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cy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투표권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음 <표3-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3-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⁷⁾

기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 유형
고용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	임시고용 : 고용기간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 계약기간을 정함 일반 임시직 : 특정 사유/조건(사업, 결원, 계절)에 따른 한시적 고용
노동시간	전 일 제 (full-time) 노동	단시간(part-time) 노동: 소정 노동시간 미만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파트: 상용직 단시간 노동 임시파트: 임시직 단시간 노동
고용주체	고용자-사용자 일치	간접고용: 고용자-사용자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노동: 사업업체 업무 감독, 파견업체 임금 지급 용역노동: 용역업체 업무 감독, 용역업체 임금지급 호출노동: 일자리가 생길 경우 한시적 노동
계약유형	고용계약 체결	특수고용 : 고용 계약 체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도급: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노무 도급제공 재택도급: 사정(이웃집 포함)에서 작업 수행

<자료: 한국정치학회(2011). p.11>

2015년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보면 <표 3-2>와 같이 정규직은 임금근로자 중 67.5%인 1,304.1백만 명이고, 비정규직은 임금근

7)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2011)의 분류에 의해 한국정치학회(2011)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p.11.에 따른 것이다.

로자 중 32.5%를 차지한 627.1백만 명이다. 이중 남성이 288.2백만 명(26.5%) 여성이 339백만 명으로 40.2%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근로자’가 363.8백만 명, 기간제근로자 286백만 명, 시간제근로자 223.6백만 명, 일일근로자 87.6백만 명, 특수근로자 49.4백만 명, 파견근로자 21백만 명, 용역근로자 30.6백만 명, 가내근로자 4.7백만 명이다.

<표 3-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⁸⁾

(단위 : 천명, %)

구분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한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일일근로자	특수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내근로자
남성	7,997 [73.5]	2,882 [26.5]	1,747 (60.6)	1367 (47.4)	688 (23.9)	607 (21.1)	139 (4.8)	87 (3.0)	349 (12.1)	8 (0.3)
여성	5,044 [59.8]	3,390 [40.2]	1,891 (55.8)	1,493 (44.0)	1,548 (45.7)	269 (7.9)	355 (10.5)	123 (3.6)	306 (9.0)	47 (1.4)
계	13,041 [67.5]	6,271 [32.5]	3,638 (58.0)	2,860 (45.6)	2,236 (35.7)	876 (14.0)	494 (7.9)	210 (3.3)	656 (10.5)	55 (0.9)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안은 비정규근로자 대비 비중.

※ 비정규근로자 : 1차적으로 근로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제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따라서 근로형태별 취업자를 모두 합한 수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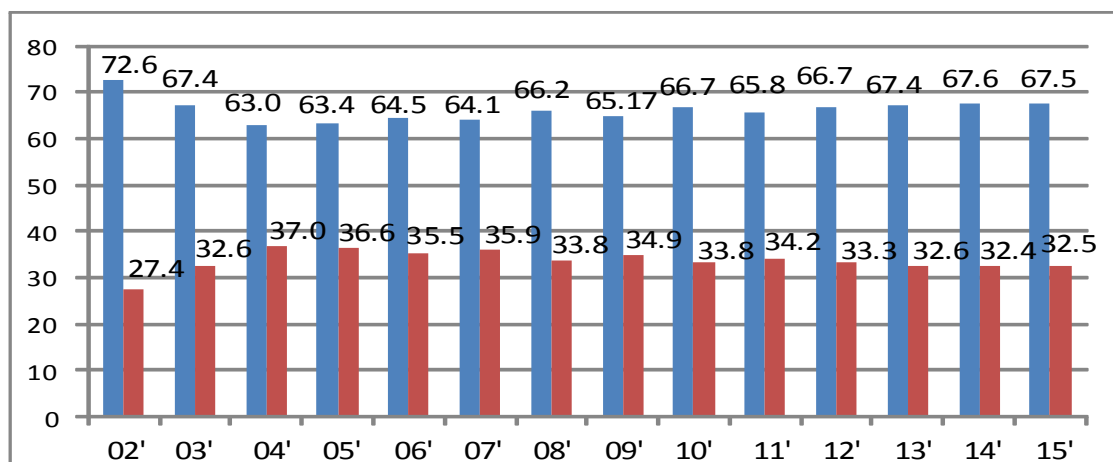
<자료: 2016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6. pp.35-37.>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비율의 추이를 보면 <그림 1-1>과

- 8) • 한시적 근로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 :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해당됨.
- 시간제근로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근로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
- 가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
- 일일근로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

같이 2002년 27.4%에서 2003년 32.6%로 상승한 후 2004년 37.0%로 상승하여 평균 34.1%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이유를 김남훈(2004)은 ‘노동법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유연화라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에 의한 것이다. 기업 측에서 계속되는 경기변동 및 생산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신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둘째 취업되어 있는 내부자와 직장을 찾고 있는 외부자간 차별문제를 들 수 있다. 기득권을 갖고 있으며 정규직에 취업중인 근로자는 단체 교섭력을 갖고 자신의 계속적 고용과 유리한 근무조건을 보장 받으려 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실업자인 외부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저렴한 측면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비정규직 증가의 요인이었다. 근로자파견법 제정으로 비서, 운전기사, 사무보조 인력 등이 비정규직화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실업율의 증가도 비정규직의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노동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낮은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여섯째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 업종의 비중 증대가 비정규직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무한경쟁 체제로 비중이 높은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하기 때문이다(김남훈 2004: 42-46). 기업체의 비정규직 활용실태는 <표 3-3>과 같다.

<그림 1-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변동추인



<자료 : 2016년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표 3-3> 기업체의 비정규직 활용실태

구 분	내 용	비 율
인력유연성	인력조정용이	79.5%
	해고가 용이	38.3%
	단기적 업무	49.5%
	계절적 일시적 필요	49.2%
비용절감	기본급	60.6%
	상여금 제수당	46.9%
	법정 복지 후생비	24.5%
	법정외 복지후생비	36.8%
업무특성	단순업무	68.7%
	정규직 기피업무	29.5%
	특별한 지식·기술	19.5%
노사문제 회피		18.0%

<자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구조가 취약해지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생계유지와 취업을 위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거나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투표참여가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에 의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인을 밝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한국 노동시장 특성과 투표참여 어려운 직종현황

(1) 한국노동시장의 특성

우리나라 근로자는 1,931만 명이다. 이중 정규직 근로자가 1,304만 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1만 명이다. 이 비정규직 중 한시근로자는 363.9만 명이며,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로 분류하면 <표 3-4>와 같이 농림·어업 8.8만 명, 광·제조업 55만 명, 건설업 72.5만 명, 도매업·음식·숙박업 123.8만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08만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9만 명으로 되어 있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직업별 분류를 보면 제조업이 16개 직업근로자, 건설업이 13개 직업근로자, 서비스업이 12개 직업근로자로 되어 있다.

<표 3-4>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및 한시근로자수 현황

(단위 : 천명)

산 업 별	비정규직 근로자수	비정규직 중 한시 근로자수
전 체	6,271	3,639
○ 농림·어업	88	22
○ 광·제조업	550	417
- 제조업	547	413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5,633	3,200
- 건설업	725	229
- 도매업·음식·숙박업	1,238	51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080	2,178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90	283

<자료 : 2016년 통계청, 2016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
가조사 결과(2015.8). p.12>

이러한 노동근로자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등의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저숙련·저기술의 나쁜 일자리는 소득도 낮을 것이며 고숙련·고기술의 좋은 일자리는 소득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 표본에서 중위임금(median wage)을 기준으로 하여 50% 미만, 50~100% 미만, 100~150% 미만, 150% 이상으로 일자리를 분류한 다음 각 그룹별에 속하는 고용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저임금의 일자리의 비중은 2.6%로 늘어났으며, 고임금층의 일자리 비중은 2.1%늘어난 반면 중간층의 일자리 비중은 줄어들어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중간임금계층의 일자리가 하위와 상위 임금계층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비중 증가폭이 고임금 일자리 고용비용 증가 폭을 상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쪽으로 비대칭적인 고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2) 1980년대 중반부터 실업과 인력난이 병존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수요와 공급간의 기능 불일치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일자리를 찾은 구직자가 보유한 기능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시장 부조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실업과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이유는 눈높이 조정의 실패와 가족에 대한 의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구직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희망임금)과 실제 시장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청년층은 취직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눈높이 문제’가 상당한 편이다. 우리 주위에도 일자리가 있음에도 임금수준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쉬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적지 않은 이유는 바로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눈높이 문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심각한 편이다. 인천 남동공단이나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는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문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병존한다는 사실은 청년실업이 단순히 경기하락에 따른 일자리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고학력화에 따른 화이트칼라 선호 현상,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법정외 복리비는 대기업의 50% 수준, 산업재해 발생률은 대기업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의 차이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과 지불능력 격차에 기인한다. 경제구조의 이중 구조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현상을 부추겨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대기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층(가구원)은 분가하여 독립한 청년층(가구주)에 비해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미혼인 가구원이 실업상태에 있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보다는 미혼,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으며, 특히 미혼 남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또한 가구의 근로외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내 성인취업자가 많을수록 취업준비를 하거나 그냥 논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즉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학교를 마친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시사한다.

3)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인력이 쉽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새로운 산업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새로운 직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과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는 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는 임금적 유연성이 있다. 이러한 노동유연성이 필요한 논거로는 첫째 지구촌경제(global economy)의 진전과 인공적 지력산업(man-made brainpower industries)의 발전 등은 우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즉 기술의 발전, 경쟁의 심화, 수요의 변화 등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구촌 경제의 발전은 노동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경제의 개방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생산물 수출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은 바로 파생수요인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동시에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기업들은 노동비용을 포함하여 생산비용의 조정가능성면에서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오늘날 빠른 기술변화, 정보화시대에 기업의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사업을 증가 및 감소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기업의 실정에 맞게 근로자를 훈련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채용하나 여유 인력을 해고할 수 있게 유연성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세계적인 경제발전의 결과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근로 형태가 정규근로이외에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해야 한다.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근로형태도 다양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발전은 지식, 기술, 정보관련 서비스업에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직종을 창출해 가면서 저기술,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력 수급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쟁체제 심화와 구직난으로 인해 비정규직인 임시직 또는 계약직 채용,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근로자 파견제 등이 확대되었다.

(2) 투표참여 어려운 직종현황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과 실업률 증가, 노동의 유연성확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빈곤층을 양산하고 유산자와 무산자,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양분하여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구성원간이 반목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을 대신해서 통치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가 국가를 구성하고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선거제도를 두고 있다. 선거란 대부분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로서 의사를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의민주주의 과정에 선거제도가 잘못 작동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현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들에게 정치참여와 정책결정 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하여 이들을 민주주의의 주변인으로 남게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즉 어떤 직종의 근로자들이 근무여건, 근무시간 등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종을 분석하고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⁹⁾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¹⁰⁾의 설

9) 2014. 6. 3 제6회 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하여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시행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만19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총 유효표본 1,500명, 표본오차 95%에 신뢰구간 $\pm 2.5\%$ 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원을 이용한 1:1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지역/성/연령별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추출로 Grid Method를 이용한 조사대상자 Contact 방법으로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10) 근로환경조사(KWCS,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임금고용자, 자영업자, 사업부, 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5만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층화집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추출을 하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개별면접조사와 CAPI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3주간 실시하였다. 여기서 직업별은 관리직(국회의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관리자, 연구관리자, 교육관련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등), 전문가(의학 연구원), 정치학 연구원, 조사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목사, 교육교사, 일반 의사, 영양사 등), 기술공 및 준전문가(생명과학 시험원, 통신장비 기사, 보건 교사, 조산사, 안마사, 보조 교사, 법무사, 전도사 등), 사무종사자(국가행정사무원, 무역 사무원, 일반 비서, 전화 상담원, 통계사무원, 사무 보조원, 속기사 등), 서비스 종사자

문결과를 활용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식조사에서 “○○님께서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전투표일(5월 30일, 31일)과 선거일(6월 4일) 모두 근무하십니까?”라고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표 3-5>의 근로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근무여부 빈도표와 같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한 직업별 조사에서 블루칼라가 44.0%로 가장 높고, 자영업 31.1%, 화이트칼라 26.3%, 농림수산업 23.1%, 학생 6.8%, 주부 5.1%, 무직/기타 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블루칼라와 자영업자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근무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거나 일일근로 또는 용역근로자로서 일정기간 연속 근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농림수산업 근로자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계절적으로 농번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5> 근로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근무여부 빈도표

직업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여부(%)				계
	사례수(명)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계	2,500	25.6	66.9	7.5	100.0
화이트 칼라	285	26.3	71.9	1.8	100.0
블루칼라	407	44.0	55.8	0.2	100.0
자영업	318	31.1	64.8	4.1	100.0
농림수산업	26	23.1	65.4	11.5	100.0
주부	311	5.1	74.9	19.9	100.0
학생	103	6.8	75.7	17.5	100.0
무직/기타	50	4.0	76.0	20.0	100.0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4차 근로환경설문조사에서 “보통 한달간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은 며칠 정도입니까?”라고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표 3-6>과 같이 거의 매주 근무하는 직종은 서비스종사자가 83.2%로 가장 많고, 다음은 판매종사자 82.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7.0%로 순

(일반 경찰관, 교도관, 간병인, 미용사, 웨딩플래너, 점술가, 주방장 및 조리사, 객실승무원 등), 판매종사자(자동차 종업원, 보험설계사, 매장 계산원, 관촉원, 인터넷 판매원, 식품 영업원, 텔레마케터 등),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채소작물 재배원, 조경원, 가축 사육 종사원, 벌목원, 해조류 양식원, 동물사육사, 해녀 등), 기능원 및 기능관련 종사자(제빵원, 정육원, 의복 재단사, 도자기 공예원, 선박 배관원, 잠수 기능원, 통신장비 수리원 등),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곡물가공제품 기계조작원, 인쇄판 출력원, 기구조립원, 택시 운전원, 화력발전장치 운전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아파트 경비원, 육아 도우미, 주유원, 택배원, 거리 미장원, 주차 안내원, 농업 단순 종사원 등), 군인으로 분류하였다.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직업별 토요일 근무일수 빈도표(%)

직업 \ 일수	1일	2일	3일	4일	계
관리직	10.8	19.0	5.1	65.1	100.0
전문가	15.6	31.6	4.3	48.8	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8.6	26.9	4.7	59.8	100.0
사무종사자	19.7	31.8	3.7	44.8	100.0
서비스종사자	1.9	12.1	2.8	83.2	100.0
판매종사자	2.8	11.5	3.3	82.4	10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3	27.2	9.8	52.7	10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2	22.5	4.3	67.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	34.7	5.9	52.9	100.0
단순노무종사자	6.0	30.7	3.9	59.3	100.0
군인	23.3	33.3	3.3	40.0	100.0

근로자들이 투표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근무시간 유연성에 대한 직업별 근무시간 변경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귀하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니까?”라는 설문을 활용하였다. 설문결과 <표 3-7>과 같이 근무시간을 회사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게 경직된 근무형태를 보인 직업은 군인이 95.9%로 가장 높고, 사무종사자 87.6%, 단순노무종사자 76.3%, 전문가 70.8%, 기술공 및 준전문가 68.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3.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1.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의 근무환경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7> 근무시간 유연성 빈도표(%)

직업 \ 구분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회사가 정해놓은 근무일정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몇 가지 제한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전적으로 내가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계
관리직	53.8	6.5	5.4	34.3	100.0
전문가	70.8	8.3	6.3	14.7	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68.0	8.1	6.3	17.6	100.0

사무종사자	87.6	5.5	3.5	3.4	100.0
서비스종사자	42.2	8.6	8.5	40.7	100.0
판매종사자	31.6	8.9	11.0	48.8	10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3	0.7	3.5	93.5	10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3.4	7.0	4.4	25.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1.9	8.3	5.6	24.2	100.0
단순노무종사자	76.3	8.2	4.2	11.4	100.0
군인	95.9	2.7	1.4	0.0	100.0

근로자들이 투표시간을 할애 받기 위한 시간활용 가능여부를 직업별로 조사하기 위해 “귀하는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 두 시간을 할애하기가(또는 할애받기가)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라는 설문을 활용하였다. 설문결과 <표 3-8>과 같이 시간을 할애 받기가 가장 어려운 직종은 군인이 33.8%로 가장 높고 다음은 단순 노무종사자 27.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0.0%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간을 할애받기 가장 쉬운 직종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8%, 판매종사자 11.8%로 나타났다.

<표 3-8> 직업별 개인시간 할애 여부 빈도표(%)

직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관리직	19.1	54.4	19.4	7.0	100.0
전문가	8.1	44.1	32.5	15.3	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6.3	44.2	32.0	17.5	100.0
사무종사자	5.2	48.2	36.3	10.3	100.0
서비스종사자	8.9	46.4	29.4	15.3	100.0
판매종사자	11.8	52.5	25.4	10.3	10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8	60.5	8.0	3.6	10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5	39.4	34.1	2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9	35.7	33.4	23.0	100.0
단순노무종사자	7.6	34.7	30.5	27.2	100.0
군인	1.4	18.9	45.9	33.8	100.0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종으로 블루칼라(44.0%)가 가장 높고, 사전투표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으로는 서비스 종사자(83.2%), 판매종사자(82.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67.0%)이며, 투표를 하기 위한 근무교대가 어려운 직종은 군인(95.9%), 사무종사자(67.6%), 단순노무종사자(76.3%)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표를 하기 위해 개인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직종으로는 군인(33.8%), 단순노무종사자(27.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3.0%), 기능직 및 관계기능종사자(20.0%)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투표하기 어려운 직종은 ****인 기능원 및 기능관련종사자(통신장비 수리원·제빵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인쇄판 출력원·택시버스 운전원), 단순노무종사자(아파트 경비원·주유원·택배원·주차 안내원), 서비스 종사자(미용사·객실 승무원)와 판매종사(백화점 판매원·매장 계산원·자동차 영업원)가 해당 될 것이다.

4. 유권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제도

한국 근로자들은 어려운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기본이 제한받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헌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면서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있다. 제도적 방안에는 선거권행사 보장제도와 교통편의 제공 및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1) 선거권 행사 보장제도

근로자에게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고

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선거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알리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벌칙규정으로 같은 법 제110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

(2) 선거권행사 교통편의 제공과 인센티브제도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행사의 보장)에 의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장애인 택시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버스를 임차하여 교통 불편지역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유권자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인 투표참여 우대제도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하였다. 이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투표확인증’을 교부하여 박물관·미술관·유적지·공공주차장 등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참여 우대제도가 투표율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 다음선거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박이석 2014: 109-110).

(3) 선거권행사 의무제도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하면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자유투표제를 표방하고 있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우리와 같이 자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표 3-9>과 같이 일부국가인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브라질, 오스트리아 등 20여개 국가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강제투표제도는 선거의 민주성이나 대표기관의 대표성 그리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까지 쉽게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사례로 호주는 1915년 강제투표를 도입하고 1922년 연방선거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강제투표 시행 전에는 50%이하였던 투표율이 강제투표 실시 이후에는 90%이상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장훈 2000).

<표 3-9> 주요 국가별 강제투표제도 규정

국가별	강제투표 규정	최근투표율(%)	비고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형(1회 위반 5~10유로, 2회 위반 10~25유로) ○ 15년 이내 4번 기권시 선거인명부에서 말소, 10년동안 참정권 상실 ○ 공무원 위반시 승진에서 제외 	91.1	주마다 규정이 상이함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형(선거일 후 30일 이내 그 사유 소명이 없는 경우 그 지역 최저임금의 3~10%벌금), 공직제한, 여권취득 제한 ○ 16세~18세, 70세 이상 선거인 및 문맹자 제외 	95.0	
룩셈부르크	벌금형, 70세 이상 또는 선거당일 외국에 있는 사람 제외	91.7	

국가별	강제투표 규정	최근투표율(%)	비고
싱가포르	의무적(기권자는 명부말소), 벌금 5싱가포르달러	92.0	
호주	벌금 20호주달러(최고 50호주달러)	94.8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세 이상 유권자, 거동이 불편한 자, 지정된 투표소로부터 200Km밖에 사는 자 제외 ○ 위반시 1개월 이하의 징역 	74.1	상징적 규정(실행하지 않음)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프하우젠 주에서만 실시 ○ 벌금 3스위스 프랑 	48.3	일부 캔턴지역 한정실시

<자료: 박이석(2014).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하락요인분석. 선거·정당·정치자금 학술논문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pp78.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검색일: 2016. 10. 25)참조.

Ⅳ.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앞장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경향 및 근로자 현황을 바탕으로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표 4-1>과 같이 근로자들이 많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근로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산업별 할당표집(quota sampling) 실시하려 했으나 지역별 근로자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른 모집단을 파악할 수 없고, 산업별 표집할당을 할 수 없어 근로자 집중지역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화된 설문지 500매를 배포하여 유의성이 있는 332매의 설문지를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기간은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다. 설문방법은 전문 설문조사원에게 설문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원이 응답자와 면대면 설문방법을 활용하여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하였다.

< 표 4-1 > 근로자 투표참여 설문조사 개요

No	구분	내용
1	조사대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유권자 중 근로자
2	조사규모	유효표본 총 500명
3	조사방법	조사원 방문 배포 후 회수
4	표본추출	지역 비례할당 추출
5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 2.3% point
6	응답자(률)	332명(66.4%)
7	조사기간	2016년 8월 5일 ~ 25일 / 20일간
8	조사수행	전문 조사원 수행

1. 설문조사 내용 및 응답자특성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4-2 >과 같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정치관심도, 4.13선거 투표참여, 투표장애요인, 투표당일 회사 상황, 투표참여 활성화제도 등 총 5개 분야 20개 문항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설문문항 중에서 투표여부와 투표참여 활성화 제도에 관한 분야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구성하였다. 이것은 근로자의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4.13선거 투표참여에서는 사전투표참여자의 인지방법과 투표 불참자의 당일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함으로써 연구보고서에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투표참여 활성화 제도에서는 현재 실시 중인 제도와 향후 실시가 가능한 제도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근로자의 투표참여율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표 4-2 > 설문조사문항 내용

No	구분	설문문항 내용	비고
1	정치관심도	문1) 응답자의 정치 관심도	
2	4.13선거 투표참여	문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여부	
		문3) 사전투표자	
		문3-1) 사전투표 인지 방법	
		문3-2) 사전투표 결정 중요 요인	
		문4) 투표 참여자 - 투표참여 결정 요인	

No	구분	설문문항 내용	비고
		문5) 투표 불참자	
		문5-1) 투표당일 상황	
		문5-2) 투표불가 상황 - 불가능한 이유	
		문5-3) 투표가능 상황 - 불참 이유	
		문5-4) 이전 투표 참여정도	
3	투표장애요인	문6) 투표참여 중요 장애요인	
4	투표당일 회사 상황	문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회사 근무상황	
		문8) 선거당일 정상근무 회사	
		문8-1) 투표시간 청구가능 사실 통지여부	
		문8-2) 투표시간 청구 시 투표 보장 여부	
5	투표참여 활성화 제도	문9) 투표참여 활성화제도 인지 정도(1)	실시 중인 제도
		문9-1) 사전투표제 인지 정도	
		문9-2)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제도 인지 정도	
		문10) 투표참여 활성화제도 인지 정도(2)	미실시 제도
		문10-1)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문10-2) 투표불참자 처벌제도	
		문10-3)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	
		문10-4) 근로자 투표활성화를 위한 제도	
		문10-5) 가장 좋은 투표참여유도 방법	개방형질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보면 <표 4-3>과 같이 성별로는 남성이 75.9%(225명)이고 여성이 15.5%(52명), 무응답 8.6%(29명)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31.0%(104명)로 가장 높고, 40대 26.8%(90명), 20대 이하가 19.1%(64명), 60대 이상이 2.7%(9명)이며, 무응답이 9.5%(31명)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47.6%(160명)으로 가장 높고, 대졸이상 42.0%(141명), 중졸이하 0.3%(1명), 기타 0.9%(3명), 무응답이 9.2%(31명)로 나타났다. 현거주지 별로는 인천이 44.9%(151명)로 가장 높고, 경기 31.0%(104명), 서울 21.7%(73명)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별 근로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68.2%(229명)이고, 한시근로 1.8%(6명), 기간제근로 10.4%(35명), 시간제근로 3.6%(12명), 일일근로

1.5%(5명), 특수근로 3.0%(10명), 파견근로 0.9%(3명), 용역근로 1.5%(5명)이고 무응답은 9.2%(31명)로 나타났다. 선거해야할 지역과 거주지역 일치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80.1%(269명)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치하지 않은 응답자는 15.8%(53명)이며, 무응답자 4.2%(14명)로 나타났다.

<표 4-3> 인구·사회적 응답자 특성분포도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비율(%)
성별	남자	255	75.9
	여자	52	15.5
	무응답	29	8.6
	계	336	100.0
연령별	20대이하	64	19.1
	30대	104	31.0
	40대	90	26.8
	50대	37	11.0
	60대이상	9	2.7
	무응답	31	9.5
	계	336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	0.3
	고졸	160	47.6
	대졸이상	141	42.0
	기타	3	0.9
	무응답	31	9.2
	계	336	100.0
현거주지	서울	73	21.7
	인천	151	44.9
	경기	104	31.0
	무응답	8	2.4
	계	336	100.0
근로형태별	정규직	229	68.2
	한시근로	6	1.8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비율(%)
	기간제근로	35	10.4
	시간제근로	12	3.6
	일일근로	5	1.5
	특수근로	10	3.0
	파견근로	3	0.9
	용역근로	5	1.5
	가내근로	0	0.0
	무응답	31	9.2
	계	336	100.0
투표할 지역과 근무지 일치여부	일치	269	80.1
	불일치	53	15.8
	무응답	14	4.2
	계	336	100.0

2. 근로자 투표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위에서 설명한 설문조사 방법과 설문구성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행태를 알아보고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에 맞는 근로자들의 투표제약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투표행태를 정치관심도, 4.13 선거 투표참여, 투표장애요인, 투표당일 회사상황, 투표참여 활성화제도 순으로 기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정치 관심도

근로자들의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가 51.8%로 가장 많고 ‘보통’과 ‘매우 많다’ 사이가 18.7%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소 정치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다’ 9.0%, ‘전혀 없다’와 ‘보통이다’ 사이가 11.7%로 나타나 설문응답자 근로자의 20.7%가 정치에 냉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치참여 의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투표에 참여에 필요한 시간보장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투표참여의 중요성과 투표의 가치 등에 대한 정치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4> 귀하께서는 평소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많다	무응답
		1	2	3	4	5	
응답 (%)	332 (100.0)	30 (9.0)	39 (11.7)	172 (51.8)	62 (18.7)	27 (8.1)	2 (0.6)

(2) 4.13선거 투표참여

지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선의 투표장소 장소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보면 투표일에 투표했다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고, 사전투표일에 투표했다가 22.0%, 투표하지 않았다가 22.6%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투표율은 사전투표 12.2%, 투표소투표 45.8%를 기록하여 설문조사 투표율이 실제투표율보다 각각 9.8%와 8.4%로 높게 나타나 전체 18.2%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과투표응답(over-reporting)”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¹¹⁾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선거일 후 유권자 의식조사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76.2%의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5> 귀하께서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어떻게 하셨나요?

구분	사례수 (명/%)	사전투표일 투표함	투표일 투표함	투표하지 않음	무응답
응답 (%)	332 (100.0)	73 (22.0)	180 (54.2)	75 (22.6)	4 (1.2)

11) 이러한 “과투표응답(over-reporting)” 현상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후 실시한 역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실제투표율과 설문조사 투표율과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실제 투표율과 선거일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19대 대통령선거(2012년) 실제 투표율 75.8%와 설문조사 투표율이 일치하고, 제6회 동시지방선거(2014년) 실제 투표율 56.8%였으나 설문조사 투표율은 56.7%를 나타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실제 투표율은 58.0%였으나 설문조사 투표율은 59.5%를 나타내 최근 선거에서 선거일 후 설문조사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과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투표율과 실제투표율의 편차(%)

구분	제17대(2004년)	제18대(2008년)	제19대(2012년)	제20대(2016년)
설문조사 투표율(A)	78.9	50.3	54.3	59.5
실제 투표율(B)	60.6	46.1	54.2	58.0
편차(A-B)	18.3	4.2	0.1	1.5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였다고 응답한 73명에게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문한 결과 76.7%가 ‘TV, 신문 등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3.7%를 나타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전투표일을 알려 주었다’ 4.1%, ‘노동조합을 통해 알게 되었다’ 1.4%로 나타나 사전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을 ‘TV,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매체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사전에 투표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TV, 라디오 및 신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6> 귀하(사전투표하신 분)께서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구분	사례수 (명)	TV,신문 등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음	친구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음	노동조합을 통해 알게 되었음	회사에서 사전투표일을 알려 주었음	무응답
응답 (%)	73 (100.0)	56 (76.7)	10 (13.7)	1 (1.4)	3 (4.1)	3 (4.1)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사전투표 하기가 편리해서’라고 응답한 자가 35.6%가 가장 높고 ‘투표당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가 30.1%로 나타났고, ‘선거당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27.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보면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어디서든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하게 하여 투표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자와 선거당일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투표하게 하며,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7> 귀하(사전투표하신 분)께서는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분	사례수 (명)	투표당일에 투표 할 수 없어서	사전투표가 편리해서	개인적 주변이나 회사 권유로	선거당일을 활용 하기 위해	기타	무응답
응답 (%)	73 (100.0)	22 (30.1)	26 (35.6)	0 (0.0)	20 (27.4)	2 (2.7)	3 (4.1)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투표참여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서’ 투표한 응답자가 60.5%로 가장 높고 ‘정책이 마음이 들어서’ 라고 응답한 자가 다음인 1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과 정책에 의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에게 국민의 의무로서 선거권을 행사 하도록 중점홍보하고, 정책투표를 하게 하여야 한다.

<표 4-8> 귀하(투표하신 분)께서는 투표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사례수 (명)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후보자 를 잘 알아서	정당당 원이라 서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 서	정치나 선거에 관심 없으나 그냥참석	기타	무등 답
응답 (%)	253 (100.0)	25 (9.9)	4 (1.6)	1 (0.4)	27 (10.7)	153 (60.5)	11 (4.3)	3 (1.2)	29 (11.5)

지난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75명에 대해 선거당일에 근무 등 투표가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는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 60.0%이고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30.7%로 나타났다.

<표 4-9> 귀하(투표하지 않은 분)께서는 선거 당일(2016. 4. 13)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구분	사례수 (명)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	무응답
응답 (%)	75 (100.0)	23 (30.7)	45 (60.0)	7 (9.1)

<표 4-9>의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표 4-10>과 같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26.7%로 가장 높고,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22.2%,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20.0%, ‘개인적인 불일이 있어서’ 8.9%,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와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6.7%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

에 관한 불신과 정치 무관심 때문에 기권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0>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분	사례수 (명)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무응답
응답 (%)	45 (100.0)	3 (6.7)	9 (20.0)	10 (22.2)	4 (8.9)	3 (6.7)	12 (26.7)	4 (8.9)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응답한 23명에게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표 4-11>과 같이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78.3%로 가장 높고,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17.4%, ‘임금이 감액(전액 혹은 일부)되기 때문에’ 4.3%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및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라는 사유로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투표에 불참한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1>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사례수 (명)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임금이 감액(전액 혹은 일부)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 문에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응답 (%)	23 (100.0)	4 (17.4)	1 (4.3)	0 (00.0)	0 (0.0)	0 (0.0)	18 (78.3)

이전 선거의 투표참여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이전 선거의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라고 설문한 결과 <표 4-12>과 같이 ‘조금 투표함’이 44.0%로 가장 높고, ‘반 정도투표함’이 29.3%이며, 투표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도 10.7%로 나타났다. 또한 ‘매번 투표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이고, ‘많이 투표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3%로 나타나 위 <표 4-10>에서와 같이 정치불신과 정치무관심이 높아 기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귀하(투표하지 않은 분)께서는 이전 선거의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 하셨나요?

구분	사례수 (명)	투표경험 전혀 없음	조금 투표함	반 정도 투표함	많이 투표함	매번 투표함	무응답
응답 (%)	75 (100.0)	8 (10.7)	33 (44.0)	22 (29.3)	7 (9.3)	1 (1.3)	4 (5.2)

(3) 투표 장애요인

선거의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무관심’을 41.0%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혐오’ 22.6%, ‘직장의 투표참여 배려부족’ 10.5%를 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일반유권자 대상 제3차 유권자의식조사 결과에서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 607명을 대상으로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28.6%로 가장 높고,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22.0%,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21.1%를 들어 일반유권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정치 및 선거에 관한 무관심’이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일본 사례’와 같이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게 하여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표 4-13> 귀하께서는 선거의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무관심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	투표참 여에 대한 혜택부 족	직장의 투표참 여 배려부 족	선거인이 평일이라 근무를 하여 야 하는 여건	기타	무응답
응답 (%)	332 (100.0)	136 (41.0)	75 (22.6)	26 (7.8)	35 (10.5)	27 (8.1)	5 (1.5)	28 (8.4)

(4) 투표당일 회사상황

응답자의 회사에서 선거일에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였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4.9%로 가장 높고, ‘선거일을 유

급휴일로 운영하였다' 34.0%,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였다' 14.5%로 응답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49.4%에 해당하는 근로자 회사에서 선거일을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운영하여 투표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에서 법정유급공휴일로 개정하는 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였다'라고 응답한 34.9%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표4-15>와 <표4-16>과 같이 설문하여 응답결과를 조사하였다.

<표 4-14>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을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였다.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였다.	선거일에 정상 근무 하였다.	기타	무응답
응답 (%)	332 (100.0)	113 (34.0)	48 (14.5)	116 (34.9)	14 (4.2)	41 (12.3)

「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3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등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응답한 회사 등이 <표4-15>와 같이 45.7%이고,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응답한 회사 등이 39.7%로 응답하였으며, 기타의견도 4.3%에 해당한다.¹²⁾ 그리고 제6조의2제2항에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보장해 주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표4-16>과 같이 53.4%이고, '보장해주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자는 28.4%에 해당하며, 기타항목도 6.9%에 해당한다.¹³⁾ 이러한 응답결과를 보면 아직 회사 등의 대표자 등이 투표참여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기타의견으로는 '잘 모르겠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등이 있었다.

13) 기타의견으로는 '운이 좋게 휴일과 겹쳤다', '근무시간외에 투표하였다.', '모르겠다.' '알지 못했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회 국회의원선거 제3차 유권자의식조사 결과 근무하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42.0%, '형식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40.1%, '보장해 주지 않았다' 17.9%로 나타났다.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를 신고하였는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100%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설문에서는 '불이익이 있을까봐'가 32.2%로 가장 높고, '고용주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31.6%,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려워서' 19.2%, 기타가 15.5%로 나타났다.

<표4-15>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통지(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하였습니까?

구분	사례수(명)	통지하였다.	통지하지 않았다.	기타	무응답
응답 (%)	116 (100.0)	53 (45.7)	46 (39.7)	5 (4.3)	12 (10.3)

<표4-16>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시간 청구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구분	사례수(명)	보장해 주었다.	보장해 주지 않았다.	기타	무응답
응답 (%)	116 (100.0)	62 (53.4)	33 (28.4)	8 (6.9)	13 (11.2)

(5) 투표 활성화제도

근로자들의 현행 투표참여 활성화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 <표 4-17>와 <표 4-18>같이 조사되었다.

근로자들의 사전투표제도 인지에 대해서는 ‘내용만 알고 있음’ 이라고 응답한 자가 31.6%로 가장 높고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음’ 31.0%,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 20.8%, ‘이름만 들어 보았음’ 9.0%,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 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83.4%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사전투표제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구분	사례수 (명)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	이름만 들어 보았음	내용만 알고 있음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	무응답
응답 (%)	332 (100.0)	18 (5.4)	30 (9.0)	105 (31.6)	103 (31.0)	69 (20.8)	7 (2.1)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내용만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가 28.3%로 가장 많고,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음’ 27.4%,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 17.8%, ‘이름만 들어 보았음’ 14.2%,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 10.8%, ‘무응답’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32.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투표참여 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3차 유권자의식조사 결과 근로자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59.7%, ‘모르고 있었다’ 40.3%와 거의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¹⁴⁾

<표 4-18>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제도(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구분	사례수 (명)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	이름만 들어 보았음	내용만 알고 있음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	무응답
응답 (%)	332 (100.0)	59 (17.8)	47 (14.2)	94 (28.3)	91 (27.4)	36 (10.8)	5 (1.5)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는 <표4-19>부터 <표4-20>과 같이 조사되었다.

투표참여 우대제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가 31.0%로 가장 많고, ‘찬성’ 29.2%, ‘적극찬성’ 22.3%, ‘반대’ 10.4%, ‘적극 반대’ 4.2%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근로자의 투표참여 우대제도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1.5%로 반대 14.6%보다 37.1%로 높게 나타났다.¹⁵⁾ 이러한 결과를 보면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등에서 승진가점제 또는 근무평가가점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되었다가 중단된 ‘투표확인증’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14)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정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전투표일(4월 8일, 9일)과 선거일(4월 13일) 모두 근무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자가 25.5%, ‘아니요’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74.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59.7%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한 자는 40.3%로 나타났다.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2008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확인증”을 투표한 유권자에게 교부하여 박물관·미술관·유적지·공공주차장 등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투표확인증” 2천7백만 매를 발행하여 1천5백 여개 국·공립 유료시설을 면제 또는 2천원 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평가에 의해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부터 활용되지 않았다.

<표 4-19> 투표참여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취업 가점,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 가?

구분	사례수 (명)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무응답
응답 (%)	332 (100.0)	14 (4.2)	35 (10.4)	104 (31.0)	98 (29.2)	75 (22.3)	6 (1.8)

투표 불참자에 대해 처벌하는 강제투표제도에 관해서는 ‘반대’가 35.1%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보통 21.4%, ‘적극 반대’ 19.9%, ‘찬성’ 13.7%, ‘적극 찬성’ 7.1%로 나타나 반대 55.0%, 찬성 20.8%로 반대가 34.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표 불참자에 대한 처벌로 강제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4-20> 투표 불참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벌금부과)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구분	사례수(명)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무응답
응답 (%)	332 (100.0)	67 (19.9)	118 (35.1)	72 (21.4)	46 (13.7)	24 (7.1)	7 (2.1)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 25.0%로 가장 높고,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22.9%,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18.2%,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강화’ 11.0%,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9.5%,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고용주의 처벌 강화’ 6.3%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에서 법정유급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며,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자구노력이 필요 하는 등 투표참여를 위한 주위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분석된다.

<표 4-21> 선거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강화	근로자의 투표참여 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선거관 리위원 회의 적극적 인 홍보	투표권을 적극행사 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고용주 처벌강화	선거일 을 법정 유급휴 일로 지정	기타	무응 답
응답 (%)	332 (100.0)	37 (11.0)	61 (18.2)	32 (9.5)	77 (22.9)	21 (6.3)	84 (25.0)	4 (1.2)	16 (4.8)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1순위로 선호하는 방안이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이 39.1%로 가장 높고, 2순위로 높은 것은 ‘사전투표시간을 2일(금·토요일)에서 3일(금·토·일요일)로 연장’ 33.6%, 3순위로 높은 것은 ‘사전투표장소(읍·면·동사무소, 역전, 대학구내 등) 증대’ 35.3%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에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 다음으로는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제 실시’ 20.9%, ‘사전투표시간을 2일(금·토요일)에서 3일(금·토·일요일)로 연장’ 20.0%, ‘사전투표장소(읍·면·동사무소, 역전, 대학구내, 백화점 등) 증대’ 13.8%, ‘투표참여 가점제도(취업시 가점) 실시’ 6.3%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들은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거나 사전투표 기간을 늘려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 장소를 증대해 투표편의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귀하께서는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1.2.3)로 기입해 주세요.

구분	사례수 (명)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제 실시	투표마감시 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	사전투표기간을 2일(금·토요일) 에서 3일(금·토·일)로 연장	사전투표장소(읍·면·동사무소, 역전, 대학구내, 백화점 등) 증대	투표참여 가점제도(취 업시 가점)실시
1순위	320 (100.0)	64 (20.9)	125 (39.1)	64 (20.0)	44 (13.8)	20 (6.3)
2순위	217 (100.0)	46 (21.2)	36 (16.6)	73 (33.6)	37 (17.1)	25 (11.5)
3순위	218 (100.0)	33 (15.1)	42 (19.3)	42 (19.3)	77 (35.3)	24 (11.0)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투표참여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 의식 고취와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및 바른 정치를 들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투표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효능감을 높여야 하며,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투표 기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표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에 대한 개방적 질문에는 <표 4-23>과 같이 정치개선(8건), 유급휴일보장(4건), 의식개선(5건), 보상제도(1건), 선거교육(4건), 우대제도(3건), 적극홍보(1건), 전자투표도입(1건), 투표가능지역 확대(1건), 투표시간연장(1건), 홍보강화(1건)로 조사되었다.

<표 4-23> 귀하께서는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있으신 분에 한하여 기입)?

구분	과제 내용
정치개선(8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정치활동
	정치가 잘 돼야 투표합니다.
	쓰레기 정치하지 말 것
	확실한 약속 이행
	바른 정치(2건)
	국회의원의 활동사항 국민 보고 시스템 마련
	정치의 선진화
의식개선(5건)	자발적 참여 유도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 참여
	국민의 의식, 책임감, 국가 사랑하는 마음
	유권자 주권의식 고취
유급휴일 보장 (4건)	투표 날 근로자 휴무보장
	투표 날 다 쉬게 해주세요.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투표확인증 제시자 한해서)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함
선거교육(4건)	선거에 대한 중요도 인식 개선
	초등학교 교재에 투표참여 내용을 기재
	투표의 필요성 교육
	투표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우대제도(3건)	고등학교 때의 권리교육 부족이라 생각함.
	국공립 공무원 준비시, 공사 취업시, 군입대 연기 및 단축
	투표확인증 발급 필요
보상제도(1건)	투표소 확인증 발부 제출시 유급휴가
	투표시 작은 기념품 증정
적극홍보(1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기업 및 정부가 적극 협조

구분	과제 내용
전자투표도입(1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전자투표
투표가능지역확대(1건)	타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게 도입 필요,
투표시간연장(1건)	투표시간 연장
홍보강화(1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3.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투표행태 분석

위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행태에 대해 전체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 절에서는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행태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어떻게 투표참여 행태와 관련되는 지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변수에 따른 비율은 유효퍼센트(%)로 나타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78.6%, 여성이 74.0%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방법으로는 남성은 사전투표보다 투표소투표를 많이 하고 여성은 투표소 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대별로 투표율은 50대가 91.1%로 가장 높고, 40대 86.5%, 30대 78.8%, 60대 이상 77.7%, 20대 5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근로자의 투표행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아지다가 60대 이상이 되면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투표행태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100.0%, 고졸 79.0%, 대졸 75.6%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방법으로는 대졸이상 학력을 갖는 근로자는 사전투표를, 고졸이하는 투표소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거주 근로자가 투표참여율이 85.9%로 가장 높고, 인천 77.8%, 경기 6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전투표 비율은 서울(28.2%), 경기(27.9%), 인천(15.3%)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거구와 거주지 일치여부에 따른 조사결과는 투표참여율이나 사전투표 모두 일치하는 근로자가 일치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근로행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의 투표참여율은 81.1%로서 비정규직의 투표참여율 71.0%보다 높았으나, 사전투표 참여율은 비정규직이 36.2%로서 정규직 19.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투표당일에 근무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4- 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참여 특성(유효퍼센트)

구분			413선거 참여여부			합계	$x^2(p)$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불참				
성별	남성	빈도	56	139	53	248	1.105 (.575)		
		%	22.6%	56.0%	21.4%	100.0%			
	여성	빈도	13	24	13	50			
		%	26.0%	48.0%	26.0%	100.0%			
연령	20대	빈도	10	22	27	59	35.569* (.000)		
		%	16.9%	37.3%	45.8%	100.0%			
	30대	빈도	33	49	22	104			
		%	31.7%	47.1%	21.2%	100.0%			
	40대	빈도	17	60	12	89			
		%	19.1%	67.4%	13.5%	100.0%			
	50대	빈도	6	25	3	34			
		%	17.6%	73.5%	8.8%	100.0%			
	60대	빈도	3	4	2	9			
		%	33.3%	44.4%	22.2%	100.0%			
	학력	중졸	빈도	0	1	0		1	8.935 (.177)
			%	0.0%	100.0%	0.0%		100.0%	
고졸		빈도	27	94	32	153			
		%	17.6%	61.4%	20.9%	100.0%			
대졸		빈도	40	65	34	139			
		%	28.8%	46.8%	24.5%	100.0%			
기타		빈도	1	2	0	3			
		%	33.3%	66.7%	0.0%	100.0%			
거주지	서울	빈도	20	41	10	71	16.043* (.003)		
		%	28.2%	57.7%	14.1%	100.0%			
	인천	빈도	22	90	32	144			
		%	15.3%	62.5%	22.2%	100.0%			
	경기	빈도	29	43	32	104			
		%	27.9%	41.3%	30.8%	100.0%			
일치 여부	일치	빈도	60	152	49	261	13.947* (.001)		
		%	23.0%	58.2%	18.8%	100.0%			
	불일치	빈도	10	20	22	52			
		%	19.2%	38.5%	42.3%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빈도	43	137	42	222	15.808* (.000)		
		%	19.4%	61.7%	18.9%	100.0%			
	비정규직	빈도	25	24	20	69			
		%	36.2%	34.8%	29.0%	100.0%			

*p<.05

* $x^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표4- 25> 근로자 사전투표제도 인지방법 특성(유효퍼센트)

(N,%)

구분		사전투표제도 인지방법				합계	$\chi^2(p)$	
		방송언론	친구지인	노동조합	회사통지			
성별	남성	빈도	45	4	1	3	53	12.529* (.006)
		%	84.9%	7.5%	1.9%	5.7%	100.0%	
	여성	빈도	7	6	0	0	13	
		%	53.8%	46.2%	0.0%	0.0%	100.0%	
연령	20대	빈도	5	2	0	2	9	11.474 (.489)
		%	55.6%	22.2%	0.0%	22.2%	100.0%	
	30대	빈도	25	5	1	1	32	
		%	78.1%	15.6%	3.1%	3.1%	100.0%	
	40대	빈도	13	3	0	0	16	
		%	81.3%	18.8%	0.0%	0.0%	100.0%	
	50대	빈도	6	0	0	0	6	
		%	100.0%	0.0%	0.0%	0.0%	100.0%	
60대	빈도	3	0	0	0	3		
	%	100.0%	0.0%	0.0%	0.0%	100.0%		
학력	고졸	빈도	25	2	0	0	27	6.539 (.366)
		%	92.6%	7.4%	0.0%	0.0%	100.0%	
	대졸	빈도	25	8	1	3	37	
		%	67.6%	21.6%	2.7%	8.1%	100.0%	
	기타	빈도	1	0	0	0	1	
		%	100.0%	0.0%	0.0%	0.0%	100.0%	
지역	서울	빈도	16	3	1	0	20	15.343* (.018)
		%	80.0%	15.0%	5.0%	0.0%	100.0%	
	인천	빈도	22	0	0	0	22	
		%	100.0%	0.0%	0.0%	0.0%	100.0%	
	경기	빈도	16	7	0	3	26	
		%	61.5%	26.9%	0.0%	11.5%	100.0%	
일치 여부	일치	빈도	49	8	0	1	58	15.705* (.001)
		%	84.5%	13.8%	0.0%	1.7%	100.0%	
	불일치	빈도	4	2	1	2	9	
		%	44.4%	22.2%	11.1%	22.2%	100.0%	
근무 형태	정규직	빈도	35	5	0	1	41	4.257 (.214)
		%	85.4%	12.2%	0.0%	2.4%	100.0%	
	비정규직	빈도	16	5	1	2	24	
		%	66.7%	20.8%	4.2%	8.3%	100.0%	

*p<.05

* $\chi^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표4- 26> 근로자 사전투표 결정 주요이유 특성(유효퍼센트)

구분			사전투표 결정 주요 이유					합계	x ² (p)	
			당일투표 불가	편리함	주변/화사 권유	선거일 활용	기타			
성별	남성	빈도	18	21	0	12	1	52	3.510 (.320)	
		%	34.6%	40.4%	0.0%	23.1%	1.9%	100.0%		
	여성	빈도	2	5	0	6	0	13		
		%	15.4%	38.5%	0.0%	46.2%	0.0%	100.0%		
연령	20대	빈도	4	2	0	3	0	9		7.314 (.836)
		%	44.4%	22.2%	0.0%	33.3%	0.0%	100.0%		
	30대	빈도	12	11	0	58	1	32		
		%	37.5%	34.4%	0.0%	25.0%	3.1%	100.0%		
	40대	빈도	3	7	0	5	0	15		
		%	20.0%	46.7%	0.0%	33.3%	0.0%	100.0%		
	50대	빈도	1	4	0	1	0	6		
		%	16.7%	66.7%	0.0%	16.7%	0.0%	100.0%		
60대	빈도	0	2	0	1	0	3			
	%	0.0%	66.7%	0.0%	33.3%	0.0%	100.0%			
학력	고졸	빈도	7	15	0	5	0	27	69.258 * (.000)	
		%	25.9%	55.6%	0.0%	18.5%	0.0%	100.0%		
	대졸	빈도	13	10	0	13	0	36		
		%	36.1%	27.8%	0.0%	36.1%	0.0%	100.0%		
	기타	빈도	0	0	0	0	1	1		
		%	0.0%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서울	빈도	7	7	0	6	0	20	7.236 (.300)	
		%	35.0%	35.0%	0.0%	30.0%	0.0%	100.0%		
	인천	빈도	7	11	0	3	1	22		
		%	31.8%	50.0%	0.0%	13.6%	4.5%	100.0%		
	경기	빈도	6	8	0	11	0	25		
		%	24.0%	32.0%	0.0%	44.0%	0.0%	100.0%		
일치 여부	일치	빈도	15	25	0	16	1	57	3.949 (.278)	
		%	26.3%	43.9%	0.0%	28.1%	1.8%	100.0%		
	불일치	빈도	4	1	0	4	0	9		
		%	44.4%	11.1%	0.0%	44.4%	0.0%	100.0%		
근무 형태	정규직	빈도	12	20	0	7	1	40	8.201* (.042)	
		%	30.0%	50.0%	0.0%	17.5%	2.5%	100.0%		
	비정규직	빈도	8	5	0	11	0	24		
		%	33.3%	20.8%	0.0%	45.8%	0.0%	100.0%		

*p<.05

* x²(p) :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사전투표 인지방법에 대해서는 위 <표4-25>와 같이 남성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인지한다’는 응답이 84.9%고 가장 높고, ‘친구나 지인에 의해 인지한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인지한다’는 응답이 53.8%이고, ‘친구나 지인에 의해 인지한다’는 응답은 46.2%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전투표제도에 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인지한다는 응답이 50대 이상 100.0%, 40대 81.3%, 30대 78.1%, 20대 55.6%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수록 방송 및 언론의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대에서는 ‘친구·지인을 통해’와 ‘회사통지’가 각각 22.2%로 나타났고, 30대에서는 ‘친구·지인을 통해’가 15.6%, ‘노동조합을 통해’와 ‘회사통지’가 각각 3.1%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 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및 대졸 근로자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인지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92.6%와 67.6%로 나타났다. 고졸 근로자는 인지 방법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가 7.4%인 반면 대졸 근로자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 21.6%, ‘회사통지’ 8.1%, ‘노동조합을 통해’ 2.7%로 나타나 대졸 근로자가 고졸근로자에 비해 인지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거구와 거주지역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거주지가 일치한 자는 ‘방송 및 신문을 통해’가 84.5%, ‘친구·지인을 통해’ 13.8%, 회사통지 1.7%로 나타났고,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자는 ‘방송 및 신문을 통해’ 44.4%, ‘친구·지인을 통해’ 22.2%, ‘노동조합을 통해’ 11.1%, 회사통지 22.2%로 나타나 인지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무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방송 및 언론을 통해’ 66.7%, ‘친구나 지인을 통해’ 20.8%, ‘노동조합을 통해’ 4.2%, 회사통지 8.3%로 인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규직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85.4%, ‘친구·지인을 통해’ 12.2%, 회사통지 2.4%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인지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 <표4-26>과 같이 ‘편리함’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당일 투표불가’와 ‘선거일 활용’이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편리함과 당일 투표불가라는 응답률이 각각 40.4%와 34.6%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선거일 활용과 편리함이라는 응답이 각각 46.2%와 38.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편리함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이유이나 남성은 당일 투표불가로, 여성은 선거일 활용으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연령의 경우 당일투표불가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편리함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편리함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22.2%/20대→ 34.4%/30대→ 46.7%/40대→ 66.7%/50대→ 66.7%/60대)은 사전투표제가 나이든 유권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근로자의 경우 편리함이라는 응답률이 55.6%로서 가장 높았으며, 대졸근로자의 경우 당일투표불가와 선거일 활용이라는 응답률이 모두 36.0%로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사전투표 참여는 고졸근로자는 편리함으로, 대졸근로자는 당일투표불가와 선거일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인천거주 근로자의 경우 편리함이라는 응답률이 50.0%로서 가장 높았고, 경기거주 근로자의 경우 선거일 활용이라는 응답률이 44.0%로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서울거주 근로자의 경우는 편리함(35.0%)과 당일투표불가(35.0%), 선거일을 활용(30.0%)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선거구와 거주지 일치여부에 따른 근로자 행태를 보면 일치하는 경우 편리함이라는 응답률이 43.9%로서 가장 높았고, 불일치의 경우 당일투표불가와 선거일 활용이라는 응답률이 모두 44.4%로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사전투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거구와 거주지의 일치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경우 편리함이라는 응답률이 50.0%로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선거일 활용이라는 응답률이 45.8%로서 가장 높았다.

4.13선거에서 근로자는 투표참여 결정요인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서’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는 위 <표4-27>과 같이 60.5%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는 응답률(남성 68.6%, 여성 7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는 ‘후보자 정책호감’이 13.0%, ‘정치관심 많음’이 12.4%, ‘후보자 잘 알고 있음’과 ‘그냥참여’가 2.4%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그냥참여’ 14.3%, ‘후보자 정책호감’ 8.6%, ‘정치관심 많음’ 2.9%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많고 후보자의 정책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답한 비율이 20대 65.5%, 30대 69.9%, 40대 69.8%, 50대 65.5%, 60대이상 85.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대는 ‘그냥참여’ 20.7%, 30대는 ‘후보자 정책호감’ 16.4%, 40대는 ‘정치에 관심 많음’ 14.3%, 50대는 ‘정치에 관심 많음’ 17.2%, 60대는 ‘후보자 정책호감’ 14.3%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답한 비율이 중졸이하는 100.0%, 고졸 73.5%, 대졸 64.9%로 나타났고, ‘후보자 정책 호감’으로는 고졸 11.8%, 대졸 13.4%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국민의 의무로 투표에 참여하고, 학력이

< 표 4-27 > 근로자 투표참여 결정요인 특성(유효퍼센트)

(N,%)

구분		투표 참여자의 결정요인							합계	$\chi^2(p)$	
		정치관 심함음	후보 자잘 알고 있음	정당 당원	후보자 정책호 감	국민기 본의무	그냥참 여	기타			
성별	남성	빈도	21	4	1	22	116	4	1	169	13.641 * (.034)
		%	12.4%	2.4%	0.6%	13.0%	68.6%	2.4%	0.6%	100%	
	여성	빈도	1	0	0	3	26	5	0	35	
		%	2.9%	0.0%	0.0%	8.6%	74.3%	14.3%	0.0%	100%	
연령	20대	빈도	2	1	0	1	19	6	0	29	38.55 3* (.030)
		%	6.9%	3.4%	0.0%	3.4%	65.5%	20.7%	0.0%	100%	
	30대	빈도	6	0	0	12	51	3	1	73	
		%	8.2%	0.0%	0.0%	16.4%	69.9%	4.1%	1.4%	100%	
	40대	빈도	9	2	0	8	44	0	0	63	
		%	14.3%	3.2%	0.0%	12.7%	69.8%	0.0%	0.0%	100%	
50대	빈도	5	1	1	3	19	0	0	29		
	%	17.2%	3.4%	3.4%	10.3%	65.5%	0.0%	0.0%	100%		
60대	빈도	0	0	0	1	6	0	0	7		
	%	0.0%	0.0%	0.0%	14.3%	85.7%	0.0%	0.0%	100%		
학력	중졸	빈도	0	0	0	0	1	0	0	1	6.390 * (.994)
		%	0.0%	0.0%	0.0%	0.0%	100%	0.0%	0.0%	100%	
	고졸	빈도	11	1	0	12	75	3	0	102	
		%	10.8%	1.0%	0.0%	11.8%	73.5%	2.9%	0.0%	100%	
	대졸	빈도	10	3	1	13	63	6	1	97	
		%	10.3%	3.1%	1.0%	13.4%	64.9%	6.2%	1.0%	100%	
기타	빈도	0	0	0	0	2	0	0	2		
	%	0.0%	0.0%	0.0%	0.0%	100%	0.0%	0.0%	100%		
지역	서울	빈도	10	1	1	7	36	1	1	57	25.18 5* (.014)
		%	17.5%	1.8%	1.8%	12.3%	63.2%	1.8%	1.8%	100%	
	인천	빈도	8	1	0	10	74	1	0	94	
		%	8.5%	1.1%	0.0%	10.6%	78.7%	1.1%	0.0%	100%	
경기	빈도	5	2	0	10	38	8	0	63		
	%	7.9%	3.2%	0.0%	15.9%	60.3%	12.7%	0.0%	100%		
일치 여부	일치	빈도	21	4	1	24	127	7	0	184	8.687 * (.192)
		%	11.4%	2.2%	0.5%	13.0%	69.0%	3.8%	0.0%	100%	
	불일치	빈도	2	0	0	3	19	2	1	27	
		%	7.4%	0.0%	0.0%	11.1%	70.4%	7.4%	3.7%	100%	
근무 형태	정규직	빈도	17	2	1	19	115	3	1	158	12.442 * (.053)
		%	10.8%	1.3%	0.6%	12.0%	72.8%	1.9%	0.6%	100%	
	비정규직	빈도	5	1	0	6	26	6	0	44	
		%	11.4%	2.3%	0.0%	13.6%	59.1%	13.6%	0.0%	100%	

* p>.05

* $\chi^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높을수록 ‘국민의 의무’와 ‘후보자의 정책’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국민의 의무’라는 응답에 인천이 78.7%로 가장 높고, 서울이 63.2%, 경기 60.3%로 나타났으며, ‘후보자 정책호감’에는 경기가 15.9%로 가장 높고, 서울 12.3%, 인천 10.6%를 나타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음’은 서울이 17.5%, 인천 8.5%, 경기 7.9%를 나타내 인천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의무’로 투표하고, 서울은 ‘정치에 관심이 많음’ 때문에 투표하며, 경기도는 ‘후보자의 정책 호감’에 의해 투표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형태별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는 응답률이 정규직 72.8%, 비정규직 59.1%로 가장 높았고, ‘후보자의 정책호감’에서는 정규직 12.0%, 비정규직 13.6%로 나타났으며, ‘정치관심 많음’은 정규직 10.8%, 비정규직 11.4%이고, ‘그냥 참여했다’는 응답에서 정규직 1.9%, 비정규직 13.6%로 나타나 국민의 의무감은 정규직이 높고, 그냥 참여한 자는 비정규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4.13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60.2%가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30.7%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표4-28>과 같이 남성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였지만 불참했다’는 응답률이 70.6%이고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가 29.4%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응답률이 63.6%로서 ‘가능하였지만 불참했다’는 응답률 36.4%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참여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고졸 투표불참자의 경우 ‘투표가 가능하지만 불참했다는 응답률’이 82.8%로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대졸 투표불참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해서 불참한 비율(51.5%)과 투표가 가능하지만 불참한 비율(48.5%)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졸근로자는 자발적 기권자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인천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당일 상황에 대하여 ‘투표가 가능하지만 불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당일 상황에 대하여 불가능한 상황과 가능한 상황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선거구와 거주지가 일치여부에 따른 근로자의 상황을 보면 거주지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지만 불참하였다는 응답률(일치 69.8%, 불일치 59.1%)이 투표 불가능한 상황(일치 30.2%, 불일치 40.9%)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투표불참자의 경우 투표가 가능하지만 불참하였다는 응답률(75.0%)이 불가능한 상황(25.0%)이라는 응답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정규직 투표불참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52.6%)과 가능하지만 불참한 상황(47.4%)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 표 4- 28> 근로자 투표불참자의 당일상황 특성(유효퍼센트)

구분			투표불참자의 당일상황		합계	$x^2(p)$
			투표불가상황	가능하지만 불참		
성별	남성	빈도	15	36	51	4.630* (.031)
		%	29.4%	70.6%	100.0%	
	여성	빈도	7	4	11	
		%	63.6%	36.4%	100.0	
연령	20대	빈도	10	15	25	7.795 (.099)
		%	40.0%	60.0%	100.0%	
	30대	빈도	11	11	22	
		%	50.0%	50.0%	100.0%	
	40대	빈도	1	10	11	
		%	9.1%	90.9%	100.0%	
	50대	빈도	0	2	2	
		%	0.0%	100.0%	100.0%	
60대	빈도	0	2	2		
	%	0.0%	100.0%	100.0%		
학력	고졸	빈도	2	24	29	7.920* (.005)
		%	17.2%	82.8%	100.0%	
	대졸	빈도	17	16	33	
		%	51.5%	48.5%	100.0%	
거주지	서울	빈도	2	6	8	3.964 (.138)
		%	25.0%	75.0%	100.0%	
	인천	빈도	7	23	30	
		%	23.3%	76.7%	100.0%	
	경기	빈도	14	16	30	
		%	46.7%	53.3%	100.0%	
일치여부	일치	빈도	13	30	43	741 (.389)
		%	30.2%	69.8%	100.0%	
	불일치	빈도	9	13	22	
		%	40.9%	59.1%	100.0%	
근무형태	정규직	빈도	10	30	40	4.389* (.036)
		%	25.0%	75.0%	100.0%	
	비정규직	빈도	10	9	19	
		%	52.6%	47.4%	100.0%	

* p<.05

* $x^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근로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거 무관심’이라는 응답률이 45.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정치혐오’와 ‘직장 배려부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25.1%와 11.7%로 나타났다. <표 4-29>와 같이 성별로는 ‘개인적 선거 무관심’이 여자가 66.0%로 남자 42.1%보다 23.9%나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배려부족’에서는 남자가 12.7%로 여자 6.4%에 비해 6.3%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높고, 남자는 여자보다 직장에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개인적인 선거무관심’에서 20대가 60.0%로 가장 높고, 30대 52.6%, 40대 42.0%, 50대 26.6%로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개인적 선거 무관심’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혐오감’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이 66.7%가 가장 높고, 50대 35.3%, 40대 35.8%, 30대 16.5%, 20대 18.2%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혐오감이 높고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적은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치와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정책을 수립하고, 연령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치 혐오감을 갖지 않게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홍보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선거무관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졸 근로자(55.2%)가 고졸 근로자(38.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정치혐오(28.5%, 21.6%), 혜택부족(9.7%, 6.4%), 배려부족(13.2%, 10.4%) 등에 대한 응답률은 고졸 근로자가 대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근로자는 정치혐오(44.3%), 인천(34.8%)과 경기(71.1%) 근로자는 선거무관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지역 근로자는 선거무관심이 투표참여 장애요인이라는 응답률이 71.1%로서 다른 지역 근로자의 응답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서울과 인천 지역의 근로자는 다양한 투표참여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경기 지역 근로자는 투표참여 장애요인이 선거 무관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로형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선거 무관심이 가장 큰 투표참여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66.7%)이 정규직(38.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정치혐오가 투표참여 장애요인이라는 응답률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선거일 평일’이 투표참여를 방해한다는 응답률은 비정규직(3.2%)에 비하여 정규직(10.3%)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직은 투표참여 장애요인이 다양한 반면, 비정규직은 투표 참여 장애요인이 선거 무관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29> 근로자 투표참여 장애요인 특성(유효퍼센트)

(N,%)

구분		투표참여 장애요인					합계	$x^2(p)$			
		선거 무관심	정치 혐오	혜택 부족	배려 부족	선거일 평일					
성별	남성	빈도	96	60	21	29	22	228	11.352 * (.023)		
		%	42.1%	26.3%	9.2%	12.7%	9.6%	100%			
	여성	빈도	31	11	1	3	1	47			
		%	66.0%	23.4%	2.1%	6.4%	2.1%	100%			
연령	20대	빈도	33	10	3	8	1	55	32.531 * (.009)		
		%	60.0%	18.2%	5.5%	14.5%	1.8%	100%			
	30대	빈도	51	16	8	14	8	97			
		%	52.6%	16.5%	8.2%	14.4%	8.2%	100%			
	40대	빈도	34	29	6	5	7	81			
		%	42.0%	35.8%	7.4%	6.2%	8.6%	100%			
	50대	빈도	9	12	3	4	6	34			
		%	26.5%	35.3%	8.8%	11.8%	17.6%	100%			
	60대	빈도	0	4	0	1	1	6			
		%	0.0%	66.7%	0.0%	16.7%	16.7%	100%			
	학력	중졸	빈도	1	0	0	0	0		1	14.702 (.258)
			%	100.0%	0.0%	0.0%	0.0%	0.0%		100%	
고졸		빈도	56	41	14	19	14	144			
		%	38.9%	28.5%	9.7%	13.2%	9.7%	100%			
대졸		빈도	69	27	8	13	8	125			
		%	55.2%	21.6%	6.4%	10.4%	6.4%	100%			
기타		빈도	0	2	0	0	1	3			
		%	0.0%	66.7%	0.0%	0.0%	33.3%	100%			
거주지	서울	빈도	19	27	3	4	8	61	51.036 * (.000)		
		%	31.1%	44.3%	4.9%	6.6%	13.1%	100%			
	인천	빈도	47	38	15	20	15	135			
		%	34.8%	28.1%	11.1%	14.8%	11.1%	100%			
	경기	빈도	69	9	7	10	2	97			
		%	71.1%	9.3%	7.2%	10.3%	2.1%	100%			
일치여부	일치	빈도	103	66	21	27	23	240	10.609 * (.031)		
		%	42.9%	27.5%	8.8%	11.3%	9.6%	100%			
	불일치	빈도	31	5	3	6	2	47			
		%	66.0%	10.6%	6.4%	12.8%	4.3%	100%			
근로형태	정규직	빈도	78	62	19	24	21	204	18.483 * (.001)		
		%	38.2%	30.4%	9.3%	11.8%	10.3%	100%			
	비정규직	빈도	42	8	3	8	2	63			
		%	66.7%	12.7%	4.8%	12.7%	3.2%	100%			

*p<.05

* $x^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사전투표제 인지도에 대해서는 <표4-30>과 같이 성별로 ‘내용을 조금 이해함’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¹⁶⁾을 합해 남성근로자의 51.8%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근로자는 62.7%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사전투표 인지도가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사전투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3.9.8%로 인지도가 가장 높고, 30대 58.6%, 60대 57.2%, 40대 55.5%, 20대 3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60.0%, 고졸이 49.4%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37.1%로 정규직이 41.6%로 나타나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제도 인지에 관해서는 <표4-31>과 같이 성별로 남성이 41.1%로 여성의 35.3%보다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제도에 대해 5.8%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40대 48.8%, 50대 58.4%, 60대 이상 44.4%)이 30대 이하(20대 20.0%, 30대 38.5%) 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 44.0%, 고졸이 37.4%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와 거주지와의 일치여부에 따라서는 일치하는 근로자가 41.3%로 일치하지 않은 근로자 28.9%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이 41.6%로 비정규직 37.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관해서는 <표4-32>와 같이 여성이 56.8%로 남성 53.6%보다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4.5%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33.3%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이상 57.5%로 고졸 50.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59.4%로 가장 높고, 서울이 54.8%, 인천이 47.6%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별은 비정규직인 64.2%고 정규직 52.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투표참여 우대 제도를 선호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30대 여성으로서 대학을 나온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불참자에 대한 처벌제도인 강제투표제 도입에 관해서는 <표4-33>과 같이 남성이 57.0%로 여성 46.1%보다 반대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7.8%로 가장 높고, 50대가 44.1%로 가장 낮으며, 20대부터 40대까지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57.5%로 가장 높고, 대졸이상이 53.9%를 나타냈다. 거주지별로는 인천이 63.2%로 가장 높고, 경기 51.4%, 서울 50.7%로 타나났으며,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이 57.2%로 비정규직 50.0%보다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강제투표제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등 모든 근로자 변수에서 반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설문에서 ‘내용만 알고 있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표 4-30> 근로자 사전투표제도 인지도 특성(유효퍼센트)

(N,%)

구분			사전투표 인지도					전체	$\chi^2(p)$		
			전혀 모름	이름만 알고 있음	내용만 알고 있음	내용 조금 이해함	내용 정확히 이해함				
성별	남성	빈도	14	25	81	70	59	249	9.803* (.044)		
		%	5.6%	10.0%	32.5%	28.1%	23.7%	100.0%			
	여성	빈도	1	3	15	25	7	51			
		%	2.0%	5.9%	29.4%	49.0%	13.7%	100.0%			
연령	20대	빈도	3	10	25	18	4	60	42.776* (.000)		
		%	5.0%	16.7%	41.7%	30.0%	6.7%	100.0%			
	30대	빈도	0	6	37	41	20	104			
		%	0.0%	5.8%	35.6%	39.4%	19.2%	100.0%			
	40대	빈도	11	8	21	22	28	90			
		%	12.2%	8.9%	23.3%	24.4%	31.1%	100.0%			
	50대	빈도	1	3	9	12	11	36			
		%	2.8%	8.3%	25.0%	33.3%	30.6%	100.0%			
	60대	빈도	0	0	3	1	3	7			
		%	0.0%	0.0%	42.9%	14.3%	42.9%	100.0%			
	학력	중졸	빈도	0	1	0	0	0		1	24.893* (.015)
			%	0.0%	100.0%	0.0%	0.0%	0.0%		100.0%	
고졸		빈도	11	20	47	40	36	154			
		%	7.1%	13.0%	30.5%	26.0%	23.4%	100.0%			
대졸		빈도	4	6	46	54	30	140			
		%	2.9%	4.3%	32.9%	38.6%	21.4%	100.0%			
기타		빈도	0	1	1	1	0	3			
		%	0.0%	33.3%	33.3%	33.3%	0.0%	100.0%			
거주지	서울	빈도	2	2	23	23	21	71	18.264* (.019)		
		%	2.8%	2.8%	32.4%	32.4%	29.6%	100.0%			
	인천	빈도	10	20	47	36	33	146			
		%	6.8%	13.7%	32.2%	24.7%	22.6%	100.0%			
	경기	빈도	5	8	34	42	14	103			
		%	4.9%	7.8%	33.0%	40.8%	13.6%	100.0%			
일치 여부	일치	빈도	11	23	90	76	62	262	10.464* (.033)		
		%	4.2%	8.8%	34.4%	29.0%	23.7%	100.0%			
	불일치	빈도	4	7	13	23	5	52			
		%	7.7%	13.5%	25.0%	44.2%	9.6%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빈도	12	24	72	64	51	223	9.394 (.052)		
		%	5.4%	10.8%	32.3%	28.7%	22.9%	100.0%			
	비정규직	빈도	0	4	24	30	12	70			
		%	0.0%	5.7%	34.3%	42.9%	17.1%	100.0%			

*p<.05

* $\chi^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표 4-31> 근로자 투표보장제도 인지 특성(유효퍼센트)

(N,%)

구분			근로자 투표보장제도					전체	$\chi^2(p)$		
			처음 듣는 이야기 임	이름만 알고 있음	내용만 알고 있음	내용 조금 이해함	내용 정확히 이해함				
성별	남성	빈도	47	36	65	74	29	251	4.443 (.349)		
		%	18.7%	14.3%	25.9%	29.5%	11.6%				
	여성	빈도	5	10	18	13	5	51			
		%	9.8%	19.6%	35.3%	25.5%	9.8%				
연령	20대	빈도	10	19	19	9	3	60	41.976* (.000)		
		%	16.7%	31.7%	31.7%	15.0%	5.0%				
	30대	빈도	19	15	30	34	6	104			
		%	18.3%	14.4%	28.8%	32.7%	5.8%				
	40대	빈도	18	9	19	31	13	90			
		%	20.0%	10.0%	21.1%	34.4%	14.4%				
	50대	빈도	3	2	10	11	10	36			
		%	8.3%	5.6%	27.8%	30.6%	27.8%				
	60대	빈도	1	0	4	2	2	9			
		%	11.1%	0.0%	44.4%	22.2%	22.2%				
	학력	중졸	빈도	0	1	0	0	0		1	18.467 (.102)
			%	0.0%	100.0%	0.0%	0.0%	0.0%			
고졸		빈도	32	26	39	44	14	155			
		%	20.6%	16.8%	25.2%	28.4%	9.0%				
대졸		빈도	17	18	44	42	20	141			
		%	12.1%	12.8%	31.2%	29.8%	14.2%				
기타		빈도	2	0	0	1	0	3			
		%	66.7%	0.0%	0.0%	33.3%	0.0%				
거주지	서울	빈도	10	4	23	24	12	73	17.883* (.022)		
		%	13.7%	5.5%	31.5%	32.9%	16.4%				
	인천	빈도	36	26	35	37	12	146			
		%	24.7%	17.8%	24.0%	25.3%	8.2%				
	경기	빈도	12	17	33	30	11	103			
		%	11.7%	16.5%	32.0%	29.1%	10.7%				
일치 여부	일치	빈도	48	31	76	77	32	264	11.130* (.025)		
		%	18.2%	11.7%	28.8%	29.2%	12.1%				
	불일치	빈도	8	15	14	12	3	52			
		%	15.4%	28.8%	26.9%	23.1%	5.8%				
근로 형태	정규직	빈도	40	35	56	68	25	224	5.998 (.199)		
		%	17.9%	15.6%	25.0%	30.4%	11.2%				
	비정규직	빈도	7	10	27	18	8	70			
		%	10.0%	14.3%	38.6%	25.7%	11.4%				

*p<.05

* $\chi^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표 4-32> 근로자 투표참여 우대제도 도입 특성(유효퍼센트)

구분			투표참여 우대제도					전체	$x^2(p)$		
			적극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찬성				
성별	남성	빈도	13	25	78	69	65	250	8.831 (.065)		
		%	5.2%	10.0%	31.2%	27.6%	26.0%	100.0%			
	여성	빈도	0	6	16	22	7	51			
		%	0.0%	11.8%	31.4%	43.1%	13.7%	100.0%			
연령	20대	빈도	2	4	19	19	16	60	28.983* (.024)		
		%	3.3%	6.7%	31.7%	31.7%	26.7%	100.0%			
	30대	빈도	0	8	29	45	22	104			
		%	0.0%	7.7%	27.9%	43.3%	21.2%	100.0%			
	40대	빈도	9	13	26	18	24	90			
		%	10.0%	14.4%	28.9%	20.0%	26.7%	100.0%			
	50대	빈도	1	5	13	7	9	35			
		%	2.9%	14.3%	37.1%	20.0%	25.7%	100.0%			
	60대	빈도	1	1	4	2	1	9			
		%	11.1%	11.1%	44.4%	22.2%	11.1%	100.0%			
	학력	중졸	빈도	0	1	0	0	0		1	18.407 (.104)
			%	0.0%	100.0%	0.0%	0.0%	0.0%		100.0%	
고졸		빈도	6	16	54	38	40	154			
		%	3.9%	10.4%	35.1%	24.7%	26.0%	100.0%			
대졸		빈도	7	14	39	52	29	141			
		%	5.0%	9.9%	27.7%	36.9%	20.6%	100.0%			
기타		빈도	0	0	1	0	2	3			
		%	0.0%	0.0%	33.3%	0.0%	66.7%	100.0%			
거주지	서울	빈도	5	4	24	24	16	73	21.484* (.006)		
		%	6.8%	5.5%	32.9%	32.9%	21.9%	100.0%			
	인천	빈도	6	16	54	29	40	145			
		%	4.1%	11.0%	37.2%	20.0%	27.6%	100.0%			
	경기	빈도	2	15	25	43	18	103			
		%	1.9%	14.6%	24.3%	41.7%	17.5%	100.0%			
일치 여부	일치	빈도	12	32	84	77	58	263	4.444 (.349)		
		%	4.6%	12.2%	31.9%	29.3%	22.1%	100.0%			
	불일치	빈도	1	2	17	19	13	52			
		%	1.9%	3.8%	32.7%	36.5%	25.0%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빈도	12	22	71	58	60	223	12.617* (.013)		
		%	5.4%	9.9%	31.8%	26.0%	26.9%	100.0%			
	비정규직	빈도	1	7	17	33	12	70			
		%	1.4%	10.0%	24.3%	47.1%	17.1%	100.0%			

*p<.05

* $x^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표 4-33> 근로자 투표불참자 처벌제도 도입 특성(유효퍼센트)

(N,%)

구분			투표불참자 처벌제도					전체	$x^2(p)$		
			적극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찬성				
성별	남성	빈도	57	85	50	38	19	249	10.883* (.028)		
		%	22.9%	34.1%	20.1%	15.3%	7.6%	100.0%			
	여성	빈도	3	21	17	8	2	51			
		%	5.9%	41.2%	33.3%	15.7%	3.9%	100.0%			
연령	20대	빈도	14	18	18	9	1	60		15.318 (.502)	
		%	23.3%	30.0%	30.0%	15.0%	1.7%	100.0%			
	30대	빈도	24	36	19	18	7	104			
		%	23.1%	34.6%	18.3%	17.3%	6.7%	100.0%			
	40대	빈도	14	36	17	13	10	90			
		%	15.6%	40.0%	18.9%	14.4%	11.1%	100.0%			
	50대	빈도	5	10	11	5	3	34			
		%	14.7%	29.4%	32.4%	14.7%	8.8%	100.0%			
	60대	빈도	2	5	1	1	0	9			
		%	22.2%	55.6%	11.1%	11.1%	0.0%	100.0%			
	학력	중졸	빈도	0	1	0	0	0	1		12.395 (.415)
			%	0.0%	100.0%	0.0%	0.0%	0.0%	100.0%		
고졸		빈도	30	58	35	17	13	153			
		%	19.6%	37.9%	22.9%	11.1%	8.5%	100.0%			
대졸		빈도	30	46	30	28	7	141			
		%	21.3%	32.6%	21.3%	19.9%	5.0%	100.0%			
기타		빈도	0	1	0	1	1	3			
		%	0.0%	33.3%	0.0%	33.3%	33.3%	100.0%			
거주지	서울	빈도	13	24	22	9	5	73	15.884* (.044)		
		%	17.8%	32.9%	30.1%	12.3%	6.8%	100.0%			
	인천	빈도	36	55	28	13	12	144			
		%	25.0%	38.2%	19.4%	9.0%	8.3%	100.0%			
	경기	빈도	16	37	21	24	5	103			
		%	15.5%	35.9%	20.4%	23.3%	4.9%	100.0%			
일치여부	일치	빈도	52	98	55	38	19	262	1.417 (.841)		
		%	19.8%	37.4%	21.0%	14.5%	7.3%	100.0%			
	불일치	빈도	11	16	14	8	3	52			
		%	21.2%	30.8%	26.9%	15.4%	5.8%	100.0%			
근로형태	정규직	빈도	46	81	46	30	19	222	5.682 (.224)		
		%	20.7%	36.5%	20.7%	13.5%	8.6%	100.0%			
	비정규직	빈도	13	22	18	15	2	70			
		%	18.6%	31.4%	25.7%	21.4%	2.9%	100.0%			

*p<.05

* $x^2(p)$: Pearson 카이제곱 값(근사 유의확률)

V. 근로자 투표참여 제약요인 및 정책적 개선 방안

1. 근로자 투표참여 제약요인

근로자의 투표참여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근로자의 불안한 신분 및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근로자는 1,931만 명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67.5%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2.5%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투표참여가 어려운 직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설문결과를 인용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식 조사에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한 직업별에서 생산직인 블루칼라가 44.0%로 가장 높고, 자영업 31.1%, 화이트칼라 2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블루칼라와 자영업이 높은 이유는 일반 근로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하거나 일일근로 또는 용역근로자로서 일정기간 연속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설문결과 사전투표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으로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83.2%, 판매종사자 82.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7.0% 순으로 나타났고, 투표하기 위해 교대근무하기 어려운 직종은 군인 95.9%, 사무종사자 67.6%, 단순노무종사자 76.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투표하기 위해 개인시간을 할애받기 어려운 직종으로는 군인 33.8%, 단순노무종사자 27.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23.0%, 기능직 및 관계기능종사자 2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표하기 어려운 직종은 블루칼라인 기능원 및 기능관련종사자(통신장비 수리원·제빵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인쇄판 출력원·택시머스 운전원), 단순노무종사자(아파트 경비원·주유원·택배원·주차안내원), 서비스 종사자(미용사·객실 승무원)와 판매종사자(백화점 판매원·매장계산원·자동차 영업원)가 해당된다.

위 앞 절에서와 같이 이를 직업군으로 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유효 표본을 선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투표참여 문제점과 제약요인은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근로자의 정치 무관심’이다. 정치 무관심은 선거관심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선거관심도와 투표율의 관계는 깊은 정비례의 상관관계($r: 0.719$, 유의수준 0.171)를 갖고 있는데, 선거에 관한 관심이 높으면 투표율이 높고 선거에 관한 관심이

낮으면 투표율이 낮다(박이석, 2014:106-108).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45.5%가 선거무관심을 들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학력별로 대졸이 고졸보다 높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선거에 무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의 정치참여 의식이 부족해서 이고, 다음은 정치효능감이 낮기 때문이다.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정치의식 교육이 필요하고,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 인센티브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들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이다. 올바른 민주 정치란 국민의 여론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여론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의 정치행태를 보면 국민의 여론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모사꾼으로 비쳐진다. 또한 선거 때에는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돈으로 정당후보가 되고, 지킬 수 없는 헛공약을 남발하여 정치를 희화화(戲畫化)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며 투표참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인들을 견제·감시하고 이를 근로자의 표로서 연결하여 걸러내는 여과기능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정상근무하거나 선거일이 무급휴일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3차 유권자의 식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25.5%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번 설문에서도 34.9%의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하였고, 14.5%의 회사가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보면 근로자의 약 30.0%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거나 약 15%가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여 투표참여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고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근로자 투표참여 시간 보장제도 미흡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28.4%에 이르고,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9.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결과에서도 17.9%가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근로자 모두가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까봐’ 32.2%, ‘고용주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31.6%, ‘신고방법 및 절차가 어려워서’ 19.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고용주가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 하는데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부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근무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입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2. 정책적 개선 방안

본 연구보고서의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중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불가능하게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가 78.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가 17.4%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투표참여율 설문조사 추이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62.2%, 2010년도 동시지방선거 55.4%를 기록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6.2%(사전투표 22.0%, 선거일 투표 54.2%)로 나타나 2010년 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율보다 20.8%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실제투표율 58.0%보다 18.2%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선거와 비교하여 설문조사 투표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사전투표효과와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이유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사전투표를 한 근로자가 22.0%로 나타났고,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전투표가 편리해서’가 35.6%, ‘선거당일에 투표할 수가 없어서’ 30.1%, ‘선거당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27.4%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근로자의 고용주들이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보한 회사 등이 45.7%이고, 근로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경우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고 응답한 자가 53.4%를 나타내 이 요인에 의해 근로자의 투표율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17) 근로자의 투표참여율에 대한 비교대상 선거는 2008년 국회의원선거와 2010년 동시지방선거이다. 이 선거를 비교한 이유는 201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에 의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2014년부터 사전투표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투표청구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용역 보고서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작성되었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① 투표시간 연장 또는 시간조정 ② 사전투표 제도개선 ③ 선거일을 법정 유급공휴일로 지정 ④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10조 엄격히 적용 ⑤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도(Incentive System) 확대 실시 ⑥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1) 투표시간 연장 또는 시간조정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투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시간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일일근로, 영세자영업자, 서비스업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에 이르고, 보편적으로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국민의 의무로 투표를 강요하기란 어렵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표 4-22>와 같이 근로자가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1,2,3) 응답해 달라는 질문에 1순위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이 39.1%로 가장 높고,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제실시가 20.9%, 사전투표기간을 2일(금,토요일)에서 3일(금,토,일)로 연장이 20.0%를 나타내 투표시간 연장이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일본에서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하여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한 결과 2001년 참의원 선거 때는 15.5%, 2003년 중의원 선거 때는 9.56%가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⁸⁾. 외국의 투표시간에 관해서는 <표 5-1>과 같이 영국은 오전 7시에 투표가 시작되어 15시간 후인 오후 10시에 종료되고, 일본은 오전 7시에 투표가 시작되어 13시간 후인 오후 8시에 종료되며, 미국은 주마다 상이하나 8~15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7시 이후에 투표시간이 종료되고 있으나 프랑스와 독일, 호주의 경우 투표종료시간이 오후 6시로 되어 있으나 휴일인 일요일에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 투표참여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도 현행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이 관리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현행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

18) Story of art arthur jung on.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왔나(<http://arthurjung.tistory.com> 검색일; 2016.10.25.).

시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6시부터 7시 사이에 출근하여 6시부터 7시 사이에 퇴근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투표시간 연장이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증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 투표사무원의 확보, 늦은 시간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제반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동시에 투표지 투표소개표와 익일개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내·관외 사전투표로 인한 업무과중과 복잡성으로 인해 동시지방선거의 경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5-1> 각국의 투표시간 및 투표일

국명	투표시간	투표일	최근 투표율
한국	06:00~18:00(12시간)	임시공휴일(수)	2016년 총선 : 58.0%
영국	07:00~22:00(15시간)	평일(목)	2010년 총선 : 65.8%
미국	각 주마다 상이(8~15시간)	평일(화)	2010년 총선 : 41.6%
네덜란드	07:30~21:00(14시간 30분)	평일(수 또는 목요일)	2010년 총선 : 75.4%
프랑스	08:00~18:00(10시간)	휴일(일)	2012년 대선 : 80.4%
독일	08:00~18:00(10시간)	휴일(일)	2009년 총선 : 70.8%
일본	07:00~20:00(13시간)	휴일(일)	2009년 총선 : 70.8%
스페인	09:00~20:00(11시간)	휴일(일)	2011년 총선 : 68.9%
필리핀	07:00~19:00(12시간)	휴일(일)	2010년 총선 : 73.4%
캐나다	08:00~18:00(10시간)	평일(월요일)	2011년 총선 : 61.4%

<자료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사전투표 제도 개선

사전투표의 편리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투표당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로 응답한 30.1%에 대한 근로자 근

무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가 90.9%로 가장 높고, 용역근로 80.0%, 정규근로 70.2%, 파견근로 66.7%, 기간제 근로 61.1%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수근로가 30.0%, 일일근로가 40.0%, 한시근로가 50.0%로 상대적으로 ‘투표당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로 응답한 자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귀하께서는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1,2,3)로 기입해 주세요’라는 설문에 2순위에서 사전투표기간을 2일(금,토요일)에서 3일(금,토,일요일)로 연장하는 것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에서 사전투표장소(읍·면·동사무소, 역전, 대학구내, 백화점 등)증대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사전투표장소를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사전투표장소를 읍·면·동사무소, 국제공항, 서울역 등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사전투표장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금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하고 일요일에 쉬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 투표할 수 있게 3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공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근로자들이 투표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장소가 찾기 어려워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등 공공장소에 사전투표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까지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전 2일에 투표소 투표용지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선거당일에 투표소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공항 또는 서울역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 대표역전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일본의 사례’¹⁹⁾와 같이 사전투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전투표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이 어렵다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전 4일부터 2일까지로 하여 금·토요일 양일간 하는 사전투표를 토·일요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이 근로자들이 투표참여 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경이 근로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화 되어 있는 선거일정과 선거관리 능력

19) 일본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2016년 4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였다. 첫째, 공공투표소 설치이다. 당해 구시군의 모든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 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공투표소 설치가 제도화 되었다. 둘째, 사전투표 시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투표시간이 일률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투표소 안에 동반 가능한 어린이의 범위를 ‘아동, 학생, 기타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찾아가는 투표소 사례로 ‘공공투표소’, ‘학교 방문사전투표소’, ‘이동사전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선규, 2016).

등을 감안하여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투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5.4%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이라고 답하였고, 9.0%는 ‘이름만 들어보았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14.4%가 홍보부족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방안으로는 설문조사결과 사전투표 인지방법에 대해 ‘TV, 신문 등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투표 기간·시간 및 편리성 등을 홍보하여 근로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을 법정 유급공휴일로 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표4-11>과 같이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을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였다’가 34.9%로 가장 높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였다’가 34.0%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선거 당일(2016년 4월 13일)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에 <표4-9>와 같이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 60.0%로 가장 높고,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30.7%로 나타났다.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중에서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표4-11>과 같이 ‘개인적인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가 78.3%로 가장 높고,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로 응답자가 17.4%, 임금이(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4.3%로 나타나 근무계약 조건에 의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유급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고용계약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 없이 투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4)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10조 엄격히 적용20)

20)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4-15>와 같이 ‘통지하였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45.7%에 달하고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39.7%를 나타냈다. 그리고 법에 의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4-16>와 같이 ‘보장해 주었다’가 53.4%, ‘보장해 주지 않았다’ 28.4%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회 국회의원선거 제3차 유권자의식조사에서 근로자 사업장의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42.0%, ‘형식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40.1%, ‘보장해 주지 않았다’ 17.9%로 나타났다.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를 신고하였는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100%로 나타났으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까봐’가 32.2%로 가장 높고, ‘고용주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31.6%,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려워서’ 19.2%로 나타나 여전히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의해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첫째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고, 둘째는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신청방법과 투표참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근로 또는 사업자 단체와 업무협약의와 제도·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현재 제6조의2제2항에 한하여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때 처벌할 수 있다. 반면에 제3항에 의한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는데 이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제3항도 처벌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이하 생략.

조향을 두고 현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상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개인별로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체신청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시간 보장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와 지역별 고용노동부에 전화(대면)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를 편리하게 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신청과 이에 따른 보장제도 및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 등에 대해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제도(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4-18>과 같이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내용만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가 28.3%로 가장 많고,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음’ 27.4%,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 17.8%로 나타나 많은 근로자들이 투표참여 보장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3차 유권자의식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자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가 59.7%, ‘모르고 있었다’가 40.3%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및 전경련, 현대·삼성 등 대기업 등에 공문서 발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정단위 별로 노동조합 및 사업장에 문서 등으로 협조요구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제도·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도(Incentive System) 확대 실시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도는 ‘일본 사례’에서와 같이 투표한 유권자에게 백화점 등 할인권을 발급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도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확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자에게 박물관·미술관·유적지·공공주차장 등을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투표참여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

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또는 취업가점제에 대한 설문에서 <표 4-19>와 같이 찬성이 29.2%, 적극 찬성 22.3%로 51.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가 31.0%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를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투표확인증’을 발행하여 국·공립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공·공원·시설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고, 주차시설을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해당연도에 한해 승진가산점 또는 근무실적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 민주시민교육강화

근로자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표4-10>과 같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26.7%, ‘정치에 별 다른 관심이 없어서’가 22.2%,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가 20.0%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선거에 대한 개인적 무관심’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에 대한 개인적 혐오’가 22.6%, ‘직장의 투표참여 배려부족’ 10.5%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한국정치학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39.1%로 가장 높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18.5%,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16.3% 순으로 나타나 이번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와 정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이용하여 ‘TV 좌담 토론회 개최’ 및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정치참여 중요성을 방영하거나 게재하고, 전문강사의 찾아가는 강의, 근로자 자체 직장교육시 민주시민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방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그 집약된 정책을 집행하며, 정부를 구성하는 기능이 선거에 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들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당선자에게 대표성과 정통성이 있게 되어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은 정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직업적 한계로 인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들이 처한 불안정한 신분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선거정치에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고, 이들에 의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보고서는 근로자 투표참여의 제약요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들이 경제·사회적 약자로서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에게 대표를 선출하는 기회마저 박탈할 경우 불만은 더욱 고조되어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투표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종으로는 블루칼라인 기능원 및 기능관련종사자(통신장비 수리원·제빵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인쇄판 출력원·택시버스 운전원), 단순노무종사자(아파트 경비원·주유원·택배원·주차안내원), 서비스 종사자(미용사·객실 승무원)와 판매종사자(백화점 판매원·매장계산원·자동차 영업원)로 조사되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근로자의 정치 관심도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로는 근로자의 4.13 선거 투표참여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에 관한 사항이며, 넷째로는 투표당일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한 내용이고, 다섯째로는 투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4.13 선거에서 근로자의 22.0%가 사전투표를 하였고, 54.2%가 투표소 투표를 하여 투표참여율은 76.2%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실제 전체투표율 58.0%보다 18.2%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과투표응답(over-reporting)”결과로 보인다. 투표참여율을 보면 세대별로는 20대가 54.2%로 가장 낮고, 30대 78.8%, 40대 86.5%, 50대 91.1%, 60대이상 77.7%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고 연령이 적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81.1%)이 비정규직(71.0%)보다 투표참여율은 높았으나, 사전투표 참여율은 비정규직이 36.2%로서 정규직 19.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전투표인지 방법에 관해서는 TV·신문 등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응답한 비율 7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구나 지인이 13.7%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84.9%)가 여자(53.8%)보다 더 많이 TV·신문 등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은 여자(46.2%)가 남자(7.5%)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여자는 지인 등 이웃을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전투표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35.6%)’와 ‘투표당일 투표할 수 없어서(30.1%)’, ‘선거일을 활용(27.4%)’이란 이유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서(60.5%)’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그렇게 응답한 근로자의 연령대로는 60대이상(85.7%)이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성(74.3%), 학력별로는 고졸(7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60.2%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30.7%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였고, 투표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26.7%)’와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22.2%)’, ‘호감후보 없음(20.0%)’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78.3%)’와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17.4%)’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 용역근로(40.0%), 시간제근로(36.4%), 특수근로(30.0%) 순으로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는 일일근로(20.0%), 시간제 근로(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하는 투표장애 요인으로는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무관심’과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혐오’, ‘직장의 투표참여 배려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권자 의식조사결과에서도 ‘정치에 관한 무관심이 없어서’와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가 가장 높아 ‘정치 및 선

거에 관한 무관심'이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60.0%로 선거에 대한 개인적 무관심이 가장 높았고, 60대가 66.7%로 정치에 대한 개인적 혐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 회사의 49.4%가 선거일에 정상 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 38.7%, 파견근로 및 한시근로 33.3%가 정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의 45.7%가 근로자들이 투표참여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주었고, 53.4%가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자들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51.8%가 '내용을 조금 이해함'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답하였고,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관해서는 찬성(51.5%)이 반대(14.6%)보다 37.1%가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30대(64.5%)가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56.8%), 학력별로는 대졸(57.5%), 지역별로는 경기(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강제투표제도는 많은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대책으로 '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과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강화'를 들었다. 그리고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과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2일(금·토요일)에서 3일(금·토·일요일)로 연장, 사전투표장소(읍·면·동사무소, 역전, 대학구내 등) 확대 등을 들었다.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근로자의 정치 무관심'이다. 정치 무관심은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고졸보다 대졸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개인적 혐오감이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이루어질 때 실망감과 혐오감을 느낀다. 이러한 혐오감으로 근로자는 투표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거나 선거일이 무급휴일로 되어 있고 투표참여 시간 보장제도의 미흡이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참여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투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등 근로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00만에 이르고,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문제 등으로 어렵다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_예산 증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 투표사무원의 확보, 야간 늦은 시간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시에 투표지 투표소개표와 익일개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근로자들이 선거당일 정상 근무하고, 사전투표기간인 금요일과 토요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기간을 2일(금·토요일)에서 3일(금·토·일요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거일정 등으로 사전투표기간을 3일로 연장이 어렵다면 현행과 같이 2일로 하되 토·일요일(선거일전 4일부터 2일간)에 사전투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사전투표장소를 읍·면·동사무소, 국제공항, 서울역 등 큰 역전 등에 사전투표장소를 확대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투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14.4%가 홍보부족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투표 기간·시간 및 편리성 등을 홍보하여 근로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일을 법정 유급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거나 무급휴일로 인해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일요일과 같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고용계약 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 없이 투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10조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신청방법과 투표참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근로 또는 사업자 단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도(Incentive System)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투표확인증’을 발행하여 백화점 또는 음식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국·공립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궁, 공원, 시설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며, 주차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해당연도에 한해 승진가산점 또는 근무실적가점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근로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선거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와 정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이용하여 ‘TV 좌담 토론회 개최’ 및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정치참여 중요성을 방영하거나 게재하고, 전문강사의 찾아가는 강의, 근로자 자체 직장교육시 민주시민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방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이 투표참여를 쉽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정부와 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많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참여했을 때 선출된 대표자는 정통성이 부여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계층이 비정규직 등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경제적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과 그 소속집단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치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의 불안을 가져오며 대표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역보고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근로자의 투표참여 제약요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가 특정지역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표본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으며, 체계적으로 표본추출을 할 수 없었다는데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선규. 2010.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와 투표 참여,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제1호. pp. 39-95.
- _____. 2016. 2016년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소 운영사례와 패러다임 전환. 선거연수원 연구과제.
- 김남훈. 2004. 『노동법 해설』. pp. 42-46.
- 김영인. 2003b. 정치참여유형에 따른 범의식 및 정치 효능감 형성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와 과학』 제42권제1호. pp. 129-163.
- 김욱,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16권제2호. pp. : 27-59.
- 박이석. 2014.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하락요인분석. 『선거·정당·정치자금 학술논문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pp78.
- _____. 2014.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투표참여제도의 관계분석. 『선거·정당·정치자금 학술논문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pp. 92-113.
- 장훈. 2000. 『호주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서울 : 나남출판사.
- 정동규. 2004. 선거와 정치참여 : 2000년 이후 한국의 선거. 『동향과 전망』. pp. 40-67.
- 임혜란. 2007. 미국 전자투표 도입과정의 주요 특징과 결정요인. 『국제·지역연구』 제16권제4호. pp. 45-76.
- 오창룡·이재승. 2015. 프랑스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지속 요인 : 전자투표 법제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EU연구』 제41권. pp. 103-13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제6회 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서울: 아람종합인쇄.
- 한국정치학회. 201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pp. 6-85.
- 한국노동연구원. 2016. 『2016 KLI 노동통계』. pp.35-37.
- 통계청. 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2015.8). p.12.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Huntington, Samuel P. &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

-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3 No.3. pp. 751-760.
- McCloskey, H. 1968. Political participation,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2, 252-265.
- McClurg, Scott D., 2003: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Social Interaction in Explain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 448-464.
-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Cambridge: MIT Press.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2002.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ongman Classics Edition.
-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2, 252-265.
- Sherrill, K. S. & Vogler, D. J.(1982). *Power, Policy and Participation : Introduction to American Government Paperback*. Joanna Cotler Books; 2nd edition.
-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검색일: 2016. 10. 25).

근로자 투표참여 및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ID (기입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객관적 실태과약을 통해 투표권 행사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투표권 행사 확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모든 응답내용은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담당자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장국찬 전화: 031-8005-2669 e-mail : gcchang@hanmail.net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조태명 전화: 031-8005=2669 e-mail : ctm2003@hanmail.net

※ 참고사항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고,
 '기타 ()' 에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께서는 평소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전혀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 () () () ()

문2) 귀하께서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어떻게 하셨나요?

- ① 사전투표일에 투표함() ⇨ **문3)**으로
 ② 투표일에 투표함() ⇨ **문4)**로
 ③ 투표하지 않았음() ⇨ **문5)**로

문3) **문2)**에서 ①이라고 응답하신 분에 한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1) 귀하께서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① TV, 신문 등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음()
 ② 친구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음()
 ③ 노동조합을 통해 알게 되었음()
 ④ 회사에서 사전투표일을 알려주었음()
 ⑤ 기타(_____)

문3-2) 귀하께서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 ① 투표 당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사전투표 하기가 편리해서()
 ③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또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권해서()
 ④ 선거일을 여유롭게 활용하기 위하여()
 ⑤ 기타(_____)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고,
 '기타 []' 에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4) 문2)에서 ① 또는 ②이라고 응답하신 분(투표하신 분)에 한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 ② 후보자를 잘 알고 있어서()
- ③ 정당에 가입한 당원이어서()
- ④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정책이 있어서()
- 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서()
- ⑥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으나 그냥 참여함()
- ⑦ 기타(_____)

문5) 문2)에서 ③이라고 응답하신 분(투표하지 않은 분)에 한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1) 귀하께서는 선거 당일(2016년 4월 13일)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 ①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 **문5-2)로**
- ②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 ☞ **문5-3)로**

문5-2) 문5-1)에서 ①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 ② 임금이(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
- ③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 ④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
- ⑤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
- ⑥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
- ⑦ 기타(_____)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고, '기타[]' 에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5-3) 문5-1)에서 ②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 ②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 ③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 ④ 개인적인 불일(여행, 경조사, 모임 등) 이 있어서()
- ⑤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 ⑥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 ⑦ 기타(_____)

문5-4) 귀하께서는 이전 선거의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 하셨나요?

- | | | | | |
|----------------|------------|-------------|------------|------------|
| 투표 경험
전혀 없음 | 조금
투표함 | 반 정도
투표함 | 많이
투표함 | 매번 투표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문6) 귀하께서는 선거의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선거에 대한 개인적 무관심()
- ② 정치에 대한 개인적 혐오()
- ③ 투표참여에 대한 혜택부족()
- ④ 직장의 투표참여 배려부족()
- ⑤ 선거일이 평일이라 근무를 하여 야 하는 여건()
- ⑥ 기타(_____)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고,
'기타()' 에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을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 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였다.
- ②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하였다.
- ③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였다. ☞ **문8)로**
- ④ 기타(_____)

문8) **문기**에서 ③이라고 응답하신 분에 한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8-1)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통지(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하였습니까?

- ① 통지하였다()
- ②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③ 기 타(_____)

문8-2)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시간
청구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 ① 보장해 주었다()
- ② 보장해 주지 않았다()
- ③ 기타(_____)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고,
'기타 []' 에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9)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투표참여 활성화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계신가요?

문9-1) 사전투표제도(선거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 | | | | |
|---------------------|---------------|--------------|----------------------|--------------------------|
|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 | 이름만 들어
보았음 | 내용만 알고
있음 |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음 |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문9-2)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제도(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 | | | | |
|---------------------|---------------|--------------|----------------------|--------------------------|
| 처음 듣는
제도
이야기임 | 이름만 들어
보았음 | 내용만 알고
있음 |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음 |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투표참여 활성화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문10-1) 투표 참여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취업 가점, 국·공립 유료 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 | | | | | |
|-------|-----|-----|-----|-------|
| 적극 반대 | 반대 | 보통 | 찬성 | 적극 찬성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문10-2) 투표 불참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벌금부과)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 | | | | | |
|-------|-----|-----|-----|-------|
| 적극 반대 | 반대 | 보통 | 찬성 | 적극 찬성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고,
‘기타 ()’ 에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10-3) 선거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강화()
- ②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 ④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 ⑤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고용주 처벌강화()
- ⑥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 ()
- ⑦ 기타(_____)

문10-4) 귀하께서는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1,2,3)로 기입해 주세요.

- ①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제 실시()
- ②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
- ③ 사전투표기간을 2일(금·토 요일)에서 3일(금·토·일 요일)로 연장()
- ④ 사전투표 장소(읍·면·동사무소, 역전, 대학구내, 백화점 등) 증대()
- ⑤ 투표참여 가점제도(취업시 가점) 실시()
- ⑥ 기타(_____)

문10-5) 귀하께서는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있으신 분에 한하여 기입)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은 만 () 세

2. 성별 남성 (), 여성 ()

3. 최종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

4. 현 거주지 서울(), 인천(), 경기()

5. 선거해야할 지역과 거주하는 지역의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6. 근로형태 정 규 직()

비정규직	한시 근로() 기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일일근로() 특수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	---

< 참고사항 >

- 한시 근로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 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 :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됨.
- 시간제 근로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일일근로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
- 특수근로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 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 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
-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 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 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지 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가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가정 내 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